

# 대한공증인협회 주요 회무

(2023. 1. 1.~2023. 12. 31.)

## 공증법령 개정 의견 제시

### ❶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2회 건의

☞ 제1차 건의(2023. 2. 22.자)

□ 공증은 국가사무이지만 전문직 공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증 사무소는 순전히 공증수수료만으로 사무소를 운영하여야 되지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78.83%, 인증 부여 건수는 26.63%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공증업무처리건수가 대폭 감소하며 공증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증사무소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 급여나 사무소 임대료는 동 기간 중 최저임금이나 오피스 임대료를 포함한 물가 인상에 상응하는 상당한 정도로 인상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증업무처리건수 및 물가·최저임금·사무소 임대료 변경추이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 후 공증인들이 품위를

지켜 가며 국가사무인 공증을 정확하고 충실히 수행하여 사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비현실적인 수수료들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개정을 2023. 2. 22. 법무부에 공식 건의함.

###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3-23호(시행 2023. 2. 22.)〉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증은 국가사무이지만 전문직 공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증 사무소는 순전히 공증수수료만으로 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들은 2010년 이래 공증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고, 공증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 사무소 운영에 매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붙임 자료 (1) 공증업무처리건수 변동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증사무소의 수수료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78.83% 감소하였고, 인증 부여 건수는 통틀어 동 기간 중 26.63% 감소함으로써, 각 공증사무소마다 공증수수료 수입도 평균적으로 그만큼 감소하였음은 명백합니다(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그 건당 수수료가 1,000원에 불과하고, 일부 특정 공증사무소에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가치가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함).

이에 반하여 공증사무소 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 급여나 사무소 임대료는 동 기간 중 최저임금이나 오피스 임대료를 포함한 물가의 인상에 상응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상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붙임 자료 (2) 최근 물가변동 자료, 붙임 자료 (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붙임 자료 (4) 대한공증인협회 입주 건물 기준 공시지가 변화 추이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실질적으로 2006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매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

습니다[2010년도에 동 규칙이 개정되긴 하였지만 당시 개정 사항은 모두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붙임 자료 (5)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정·개정 등 연혁 참조)].

특히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 그 가액 기준은 연혁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2가 정하는 소가 기준과 그 궤를 같이 해 왔으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경우 2006년 2천만100원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는 2014. 7. 1. 부터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공증인들이 품위를 지켜 가며 국가사무인 공증을 정확하고 충실히 수행하여 사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비현실적인 수수료 규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와, 귀 부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증업무처리건수 변동 현황 (2010년~2022년, 연간 합계).

붙임 : (2) 최근 물가변동 자료.

붙임 : (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붙임 : (4) 대한공증인협회 입주 건물(서일빌딩)  
 기준 공시지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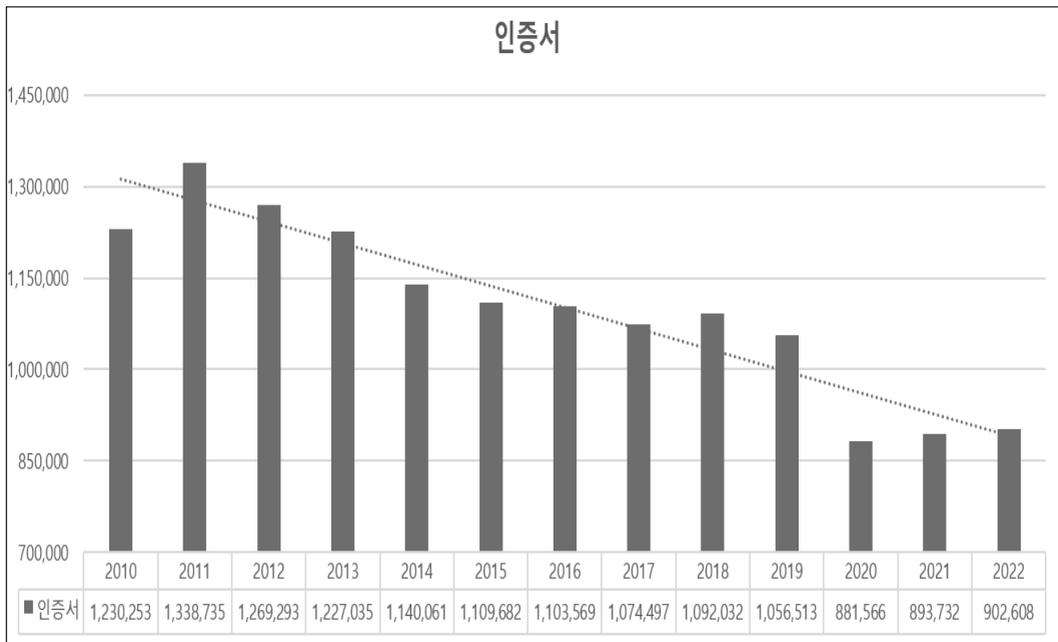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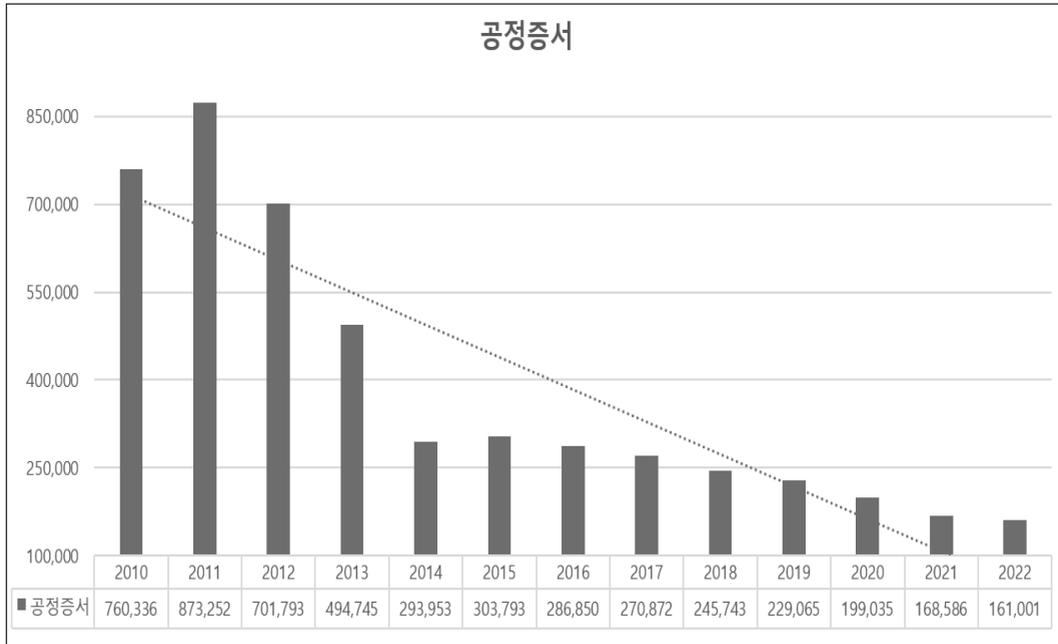
붙임 : (5)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정·개정  
 등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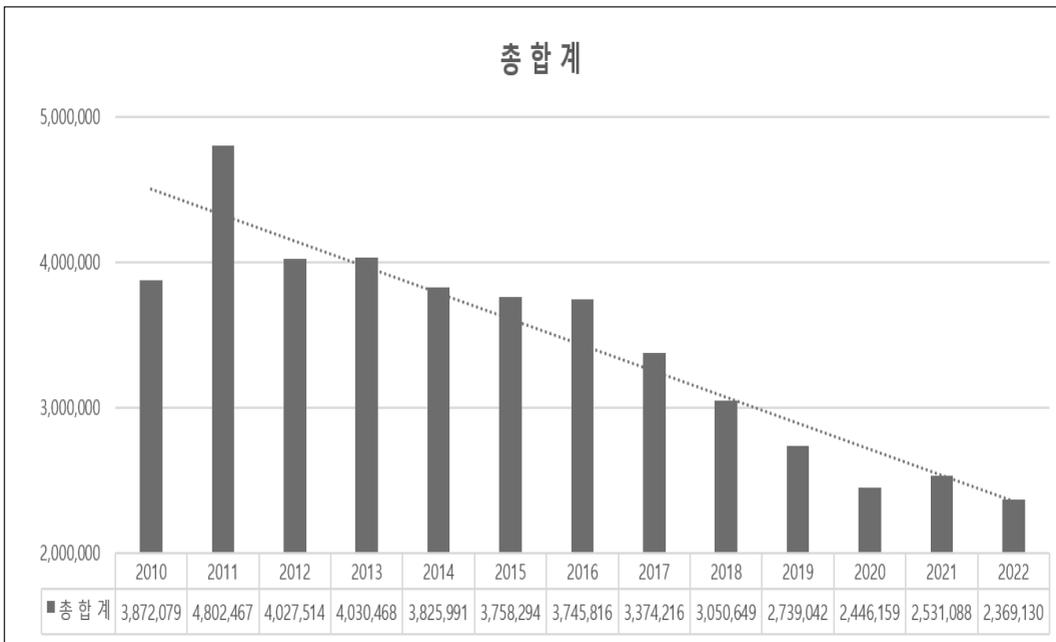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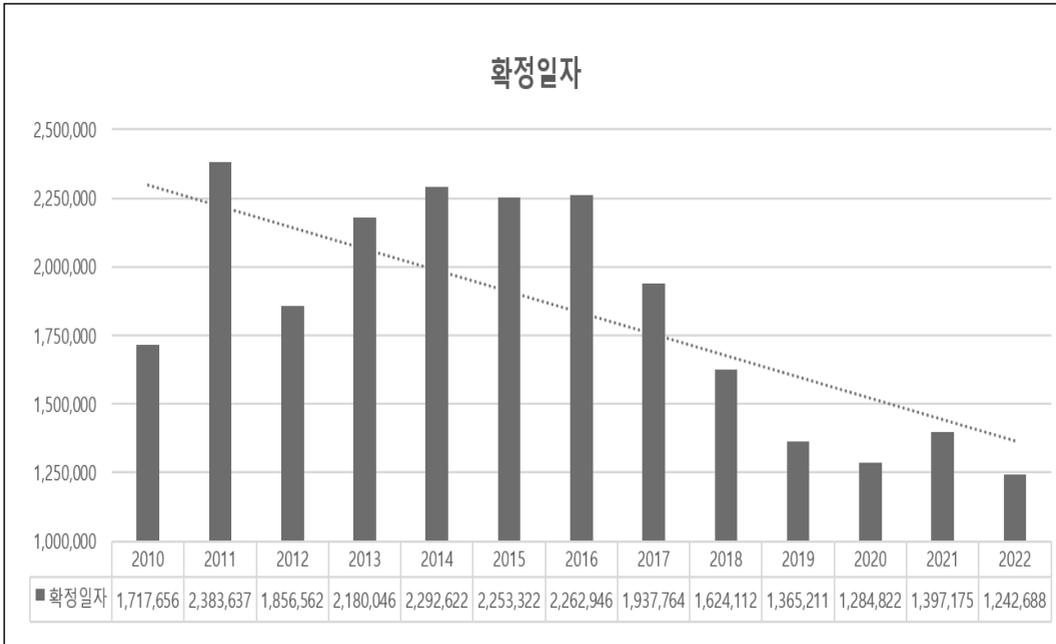
# 붙임 자료

(1) 공증업무처리건수 변동 현황(2010년~2022년, 연간 합계)

연도	회원 수 (대행청)	공정증서	인 증 서				확정일자	기 타	총 합 계
			정 관	의사록	사서증서	합 계			
2010	397 (14)	760,336	10,985	396,193	823,075	1,230,253	1,717,656	163,834	3,872,079
2011	379 (14)	873,252	8,556	438,766	891,413	1,338,735	2,383,637	206,843	4,802,467
2012	364 (13)	701,793	5,582	402,150	861,561	1,269,293	1,856,562	199,866	4,027,514
2013	358 (12)	494,745	4,697	394,639	827,699	1,227,035	2,180,046	128,642	4,030,468
2014	356 (12)	293,953	3,699	380,142	756,220	1,140,061	2,292,622	99,355	3,825,991
2015	345 (12)	303,793	3,195	383,747	722,740	1,109,682	2,253,322	91,497	3,758,294
2016	343 (12)	286,850	2,668	366,111	734,790	1,103,569	2,262,946	92,451	3,745,816
2017	337 (13)	270,872	2,433	331,446	740,618	1,074,497	1,937,764	91,083	3,374,216
2018	336 (13)	245,743	2,329	353,491	736,212	1,092,032	1,624,112	88,762	3,050,649
2019	335 (13)	229,065	2,288	346,906	707,319	1,056,513	1,365,211	88,253	2,739,042
2020	329 (13)	199,035	2,304	354,822	524,440	881,566	1,284,822	80,736	2,446,159
2021	324 (13)	168,586	2,391	360,243	531,098	893,732	1,397,175	71,595	2,531,088
2022	323 (13)	161,001	1,942	340,468	560,198	902,608	1,242,688	62,833	2,369,130

- ▶ 위 자료는 법무부 법무연감 발췌 및 법무부 법무과에서 제공받은 자료임  
 (단, 2017년도~2021년도 총 합계는 2022년도 법무연감 통계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 2022년도 자료는 협회 내부 자료에 의한 비공식 통계임  
 (단, 공증대행청의 통계는 2022년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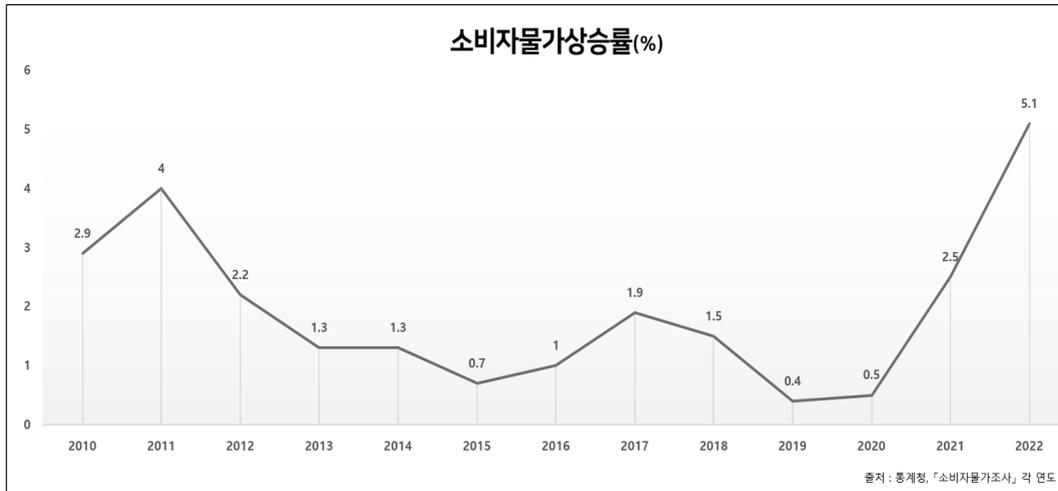


(2) 최근 물가변동 자료

소비자물가총지수와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2020=100,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비자물가총지수(2020=100)	86.4	89.9	91.8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소비자물가상승률(%)	2.9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식료품·비주류음료	6.4	8.1	4.0	0.9	0.3	1.6	2.3	3.4	2.8	0.0	4.4	5.9	5.9
주류 및 담배	0.4	0.8	1.5	1.7	-0.1	50.1	0.7	1.5	0.3	0.6	0.3	0.4	2.2
의류 및 신발	2.9	3.3	4.8	2.9	4.0	1.3	1.8	1.1	1.1	0.1	0.7	0.6	3.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2.4	4.5	4.6	3.5	2.9	-0.6	-0.8	1.7	0.7	1.2	0.5	1.6	5.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4	3.7	2.9	0.3	2.1	2.6	1.6	1.1	2.3	2.1	0.0	1.9	4.8
보건	1.7	1.8	0.9	0.4	0.7	1.3	1.0	0.9	-0.1	0.5	1.5	-0.1	0.8
교통	4.9	7.0	3.2	-0.5	-1.6	-7.8	-2.2	3.6	2.4	-1.8	-1.8	6.3	9.7
통신	-0.9	-1.6	-2.6	-0.1	-0.1	-0.2	0.1	0.3	-0.9	-2.3	-2.1	-0.9	0.9
오락 및 문화	0.9	1.6	0.3	1.0	0.4	-0.5	1.8	0.1	0.5	-0.2	-1.0	0.4	2.8
교육	2.3	1.7	1.4	1.2	1.5	1.7	1.6	1.1	1.4	0.5	-2.1	0.9	1.3
음식 및 숙박	2.3	4.3	1.2	1.6	1.5	2.3	2.5	2.4	3.0	1.8	0.9	2.7	7.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5	3.2	-3.3	0.5	3.1	2.7	3.4	2.8	0.6	1.6	2.0	2.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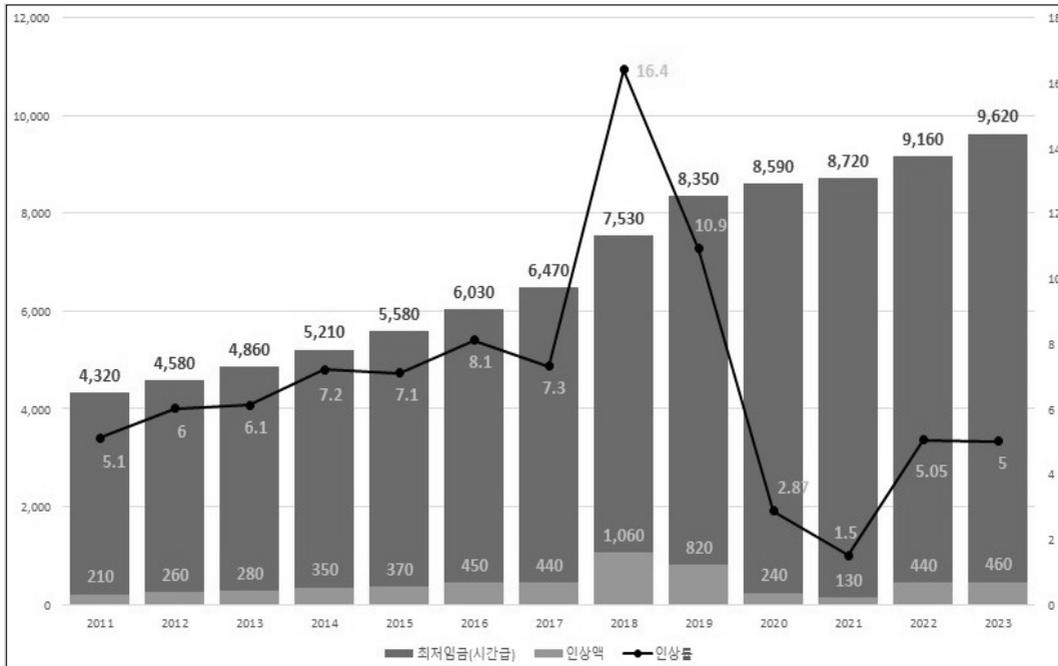


- ➡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수준이며, 이를 특정 기준년도를 100으로 놓고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임. 물가수준의 변화는 물가지수의 변화율인 물가상승률로 나타남(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 ➡ 물가지수의 변화율이 양(+)이므로 물가는 계속하여 올라가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상승함.

(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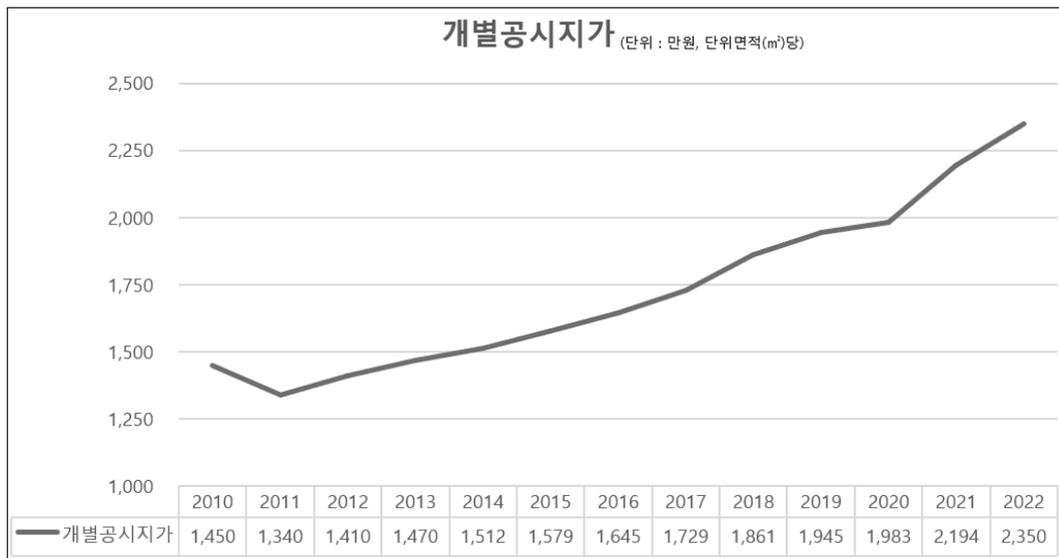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시간급, 원)
2011	4,320
2012	4,580
2013	4,860
2014	5,210
2015	5,580
2016	6,030
2017	6,470
2018	7,530
2019	8,350
2020	8,590
2021	8,720
2022	9,160
2023	9,620



(4) 대한공증인협회 입주 건물(서일빌딩) 기준 공시지가 변화 추이

서일빌딩 개별 공시지가 현황 (출처: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단위면적(㎡)당산정가격임.						
신청대상 토지			확인내용			
가격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비고
2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23,500,000원	1월 1일	2022.04.29	
20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21,940,000원	1월 1일	2021.05.31	
20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9,830,000원	1월 1일	2020.05.29	
20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9,450,000원	1월 1일	2019.05.31	
20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8,610,000원	1월 1일	2018.05.31	
20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7,290,000원	1월 1일	2017.05.31	
2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6,450,000원	1월 1일	2016.05.31	
20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5,790,000원	1월 1일	2015.05.29	
20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5,120,000원	1월 1일	2014.05.30	
20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4,700,000원	1월 1일	2013.05.31	
2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4,100,000원	1월 1일	2012.05.31	
20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3,700,000원	1월 1일	2011.05.31	
20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3-8번지	14,500,000원	1월 1일	2010.05.31	



(5)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정·개정 등 연혁

No	제 명	제정일·개정일	시행일	비 고
1	공증인수수료규정	1962. 1. 16. 제정	1962. 1. 16. 시행	법무부령 제31호
		1963. 6. 22. 일부 개정	1963. 7. 1. 시행	법무부령 제65호
		1965. 10. 11. 일부 개정	1965. 10. 11. 시행	법무부령 제84호
		1969. 7. 21. 전부 개정	1969. 7. 21. 시행	법무부령 제138호
		1971. 2. 12. 일부 개정	1971. 2. 12. 시행	법무부령 제172호
		1974. 8. 26. 일부 개정	1974. 8. 26. 시행	법무부령 제188호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1979. 6. 15. 일부 개정	1979. 7. 1. 시행	법무부령 제211호
		1985. 8. 1. 일부 개정	1985. 8. 1. 시행	법무부령 제275호
		1986. 12. 24. 일부 개정	1986. 12. 24. 시행	법무부령 제292호
		1991. 10. 7. 일부 개정	1991. 10. 7. 시행	법무부령 제356호
		1993. 2. 24. 일부 개정	1993. 2. 24. 시행	법무부령 제366호
		1996. 12. 31. 일부 개정	1997. 1. 1. 시행	법무부령 제435호
		2006. 12. 14. 일부 개정	2006. 12. 14. 시행	법무부령 제604호
		2010. 2. 5. 일부 개정	2010. 2. 7. 시행	법무부령 제693호

☐ 제2차 건의(2023. 8. 17.자)

☐ 2023. 4.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동 규칙이 2006년 개정된 이후 1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차임 상승·임금 상승 등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 및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가액의 인상은 수수료 현

실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며, 공증인 업무의 강도(強度)나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는 그 업무에 맞게 수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협회가 회원 의견 수렴 결과를 골자로 마련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및 공증수수료 산정의 기준 개정안을 2023. 8. 17. 법무부에 공식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3-87호(시행 2023. 8. 17.)>

수신 : 법무부장관

제목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등에 관한 건의

1. 우리 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공증인법 시행령 제42조(건의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등에 관하여 건의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2023년 4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적절한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금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사실상 2006년에 개정된 이후 1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차임 상승·임금 상승 등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회원들은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공증업무의 종류, 수수료 인상의 폭,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이유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회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하였고, 그 결과 공증인이 국가 사무인 공증업무를 적절·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의 인상과 목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가액의 인상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의 사항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강도(強度)나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는 그 업무에 맞게 수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등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

# 붙임 자료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

---

2023. 8. 대한공증인협회

1.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의 필요성
- 가. 사실상 17년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음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은 2010년에 개정된 이후 13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0년에 개정된 규칙은, 그 이전의 수수료를 상당부분 인하하는 것이어서 물가 상승 등 당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2006년의 개정 이후 사실상 17년 동안 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규칙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 가액 산정불능의 경우” 그 가액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가 정하는 소가 기준과 그 궤를 같이해 왔는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2014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반면에, 현행 규칙은 2006년에 개정된 “2천만 100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공증업무 처리 건수의 급감**

공증사무소의 수수료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78.83%가 감소하였고(2010년 760,336건, 2022년 161,001건), 인증 부여 건수는 같은 기간에 26.63%가 감소하는 등(2010년 1,230,253건, 2022년 902,608건), 공증 업무 처리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그에 따라 공증인의 수수료 수입도 대폭 감소하였다.

**다. 공증사무소의 차임 등 비용의 급증**

공증인의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과 사무소 차임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증인 사무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공증인 사무소의 운영에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①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2020=100.0)로서, 2010년 86.4에 비해 24.65% 인상.
- ②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은 9,620원으로서, 2010년 4,110원에 비해 134% 인상.
- ③ 2022년 대중교통요금(간선, 자선 버스 일반인 기준)은 1,200원으로서, 2010년 900원에 비해 33.33% 인상됨.

**라. 요약**

규칙은 사실상 2006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현행 규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증인들이 품위를 지켜가며 국가 사무인 공증 업무를 적정(適正)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현행 수수료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현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우리나라의 규칙과 일본의 공증인수수료령과의 비교**

**가. 개요**

빅맥 지수(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함)나 환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물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높은 데 반해 공증인 수수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저렴하다. 그런데 일본의 공증인법령의 체계와 내용, 공증인 수수료 산정방식 등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증인 수수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정을 비교한다.

나. 우리나라의 수수료와 일본의 수수료에 대한 비교

※ 1円(엔)은 9.20원(2023. 7. 14. 현재)

항목	우리나라	일본
법률행위 증서 작성	(목적가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	(목적가액에 따라 10단계로 구분)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100만円 이하 ..... 5,000円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100만円 초과 200円 이하 ..... 7,000円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200만円 초과 500円 이하 ..... 11,000円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500만円 초과 천만円 이하 ..... 17,000円
	1천500만원초과 ..... 44,000원+(목적가액-1,500만원) × (3/2,000} 단, 300만원 초과하지 못함.	천만円 초과 3천만円 이하 ..... 23,000円 (중간 생략) 10억円 초과 ..... 249,000円에 초과액 5,000만円마다 8천円 가산(상한 없음)
목적가액 산정불능	간주가액 2천만100원 ..... 51,500원	간주가액 500만円 ..... 11,000원
출장 직무집행	일당 : 4시간 이내 ..... 5만원 4시간 초과 ..... 10만원	일당 : 1일 ..... 2만円 다만, 4시간 이내 ..... 1만円
증서원본 정관열람	1회 ..... 1천원	1회 ..... 200円
장수 초과료	4장 초과 장수 1장마다 ..... 500원	4장 초과 장수 1장마다 ..... 250円
증서정보	1장마다 ..... 500원	1장마다 ..... 250円

항목	우리나라	일본
사실실험 증서작성	1시간당 ..... 25,000원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 가산	1시간마다 ..... 11,000円
인증행위	사서증서 인증 : 증서작성 수수료의 5/10. 50만원 초과 금지	사서증서, 전자적 기록 인증. ..... 11,000円※주1)
	선서인증 : 사서인증 수수료에 5/10 가산. 75만원 초과 금지	선서인증 ..... 11,000円 외국어 기재 ..... 6,000円 가산
	외국어 사서인증 ..... 사서인증 수수료의 2배. 100만원 초과 금지	사서증서, 전자적 기록이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 ..... 6,000円 가산
	집합건물법상의 의사록 및 서면 결의서 인증 ..... 각 12,000원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서면의 인증 ..... 23,000円
	사서증서 등본 인증 ..... 12,500원	사서증서 등본 인증 ..... 5,000円
수취서 거절증서 등 작성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 초청장 1시간 이내 1건당 ..... 10,000원 초과된 1시간마다 ..... 3,000원 가산 피초청인 5명까지 ..... 25,000원 초과된 1명마다 ..... 2,000원 가산	수취서, 거절증서, 위임장 ..... 7,000円
유언증서 작성	유언증서 작성 특별 규정 무	유언의 목적가액이 1억円 이하인 경우, 법률행위증서 작성 수수료에 11,000円 가산
집행문 부여	단순 집행문 부여 ..... 10,000원 조건부, 승계, 수통의 집행문 부여 ..... 각 20,000원	좌동 ..... 1,700円 좌동 ..... 3,400円
집행권원 집행문 송달	공증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 ..... 우편법에 따른 우편 요금 집행권원의 우편 송달 ..... 우편법에 따른 우편 요금+4,000원	채무명의, 집행문 송달 ..... 1,400円 송달증명 ..... 250円
의사록 정관 인증	법인 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 30,000원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의사록 ..... 23,000円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80,000원 5천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1/2000 가산 100만원 초과 금지	회사법,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상의 정관※주2) ..... 50,000円

항목	우리나라	일본
주주총회 등	주식회사 설립경과 등 조사, 보고 발행주식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 100만원 5천만원 초과시 ..... 100만원+(발행주식의 액면총액-5천만원)×(3/2,000) 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주주총회 기타 집회의 결의에 관한 증서 작성. ..... 사실실험증서 작성의 예에 의함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1건당 ..... 1,000원	확정일자 1건당 ..... 700円 전자적 기록에 일부정보를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임.

※ 주1) 다만, 당해 사서증서를 증서로서 작성할 때의 수수료 금액의 5/10의 금액이 11,000円(엔)을 하회할 때에는 당해 하회하는 금액에 의한다. 따라서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와 같이 금액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의 산정불능이 되는 서면의 경우에는 5,500円이 수수료가 된다. 또한 위임장의 인장은 위임장 공정증서의 수수료의 반액인 3,500円이 수수료가 된다.  
 ※ 주2) 법인 자본금의 액 등이 100만円 미만인 경우 30,000円, 100만円 이상 300만円 미만인 경우 40,000円, 위 경우 이외의 경우는 50,000円이다. 정관 자본금의 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 정관 중에는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최저액을 기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50,000円이다.

### 3.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에 대한 회원의 의견 결과

#### 가. 개요

대한공증인협회는 2023. 4.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할 특정 공증 업무의 종류, 수수료 인상의 폭,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이유 등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아래에서는 공증인 수수료 인상에 대한 회원들의 주요 의견을 소개한다.

#### 나. 회원의 구체적 의견

- (1) 공증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들이 공증인 수수료의 인상 내지

현실화를 요구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지난 1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 사무소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은 꾸준히 있었던 반면에 공증인 수수료는 오히려 2010년에 2006년보다 인하된 후 지금까지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② 외국인 혹은 장애인이 의뢰인인 경우, 통역인이나 참여인이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소요되나, 통역인이나 참여인이 없는 경우와 수수료가 동일하다. 이 경우 수수료를 증액하여야 한다.
- (2)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규칙 제13조)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현행 2천만 100원을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을 고려하여 최소한 5천만 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일본은 그러한 경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500만円(엔)으로 본다(수수료는 11,000円)}.

**(3) 법인 의사록 인증(규칙 제21조 제2항)**

- 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청문 인증의 수수료를 물가수준과 공증인의 업무 강도 및 업무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 ② 회원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의 의사록 인증 촉탁인이 공증이나 의사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서류 작성 능력이 없으며, 등기소의 보정 명령과 관련한 과도한 민원이 많아 매우 힘들다. 수십에서 수백 장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및 의사록 내용의 정관·민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여부 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 업무의 난이도, 작성 시간(2시간 이상) 및 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수수료(3만 원)가 지나치게 저렴하고, 사서인증과 달리 장수 초과·보존 수수료를 받지 않은 반면, 공증 창고의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본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

수수료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회원 5인을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부과하는 등 인증 촉탁 인원(또는 안건 수)에 따른 부가수수료를 받고, 장수에 따른 제작·보존 수수료 또한 추가로 받아야 한다.

- ③ 상법상 회사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상법상 소규모 회사)는 10만 원, 그 이상의 회사는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되, 상장회사의 경우는 최대치의 수수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주총이나 이사회 안건마다 각 의결 정족수 등 상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명부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양이 보통 수십 장이며 그 작성 또한 매우 어려워 공증사무소에 수회 문의하는 등 업무량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4) 위임장 인증(규칙 제21조의2)**

수임인이 법무사나 변호사인 등기 위임장과 소송위임장(제소전화해 위임장 포함)의 인증은 공증의 법적 효력,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의 크기, 위임인의 책임, 공증 사무의 법적 책임 등에 비해 기본수수료(3,000원)가 지나치게 낮아 공증의 신뢰도 제

고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 위임장과 구분할 이유도 없으므로, 일반 사서인증의 경우와 동일하게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로 보아 기본 수수료를 25,750원, 그 외의 위임장은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5) 도시정비법 등 조합 총회 참석 인증 (법인의사록지침 제13조, 규칙 제19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조합(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참석 인증 시, 이들 조합 총회는 통상 2시간 내지 5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업무 시간 외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 업무의 난이도가 있으므로, 참석 인증 수수료는 300만 원을 책정함이 마땅하고, 체계상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조합에 대한 참석 인증 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 국문 초청장 인증(규칙 제20조, 제19조 제3항)**

초청장 중 단순 초청 내용보다 신원보증 또는 법률행위 약속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첨부 서류가 많은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사서인증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서인증과 동일하게 목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국문 초청장 인증 수수료는 25,750원이 타당하다.

**(7) 사서증서 인증(규칙 제20조)**

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나 각종 목적물의 가액이 규칙이 개정된 2010년보다 많이 올랐다. 특히 협의이혼 재산분할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쌍무의 경우 부동산 하나만 들어가도 목적의 가액이 326,166,166원 이상이 되어 수수료 상한가(50만 원)가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규칙이 개정된 2010년 이전에는 사서인증 수수료의 상한이 150만 원이었으므로 사서인증 수수료의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해야 한다.

②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현실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끝자리가 250원, 750원과 같은 수수료를 500원, 1,000원 단위로 끝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8) 약속어음 공정증서(규칙 제2조)**

어음의 발행은 단독행위이나 어음 공정증서 촉탁행위는 발행인과 수취인

간 쌍방 촉탁이고, 발행인과 수취인이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비하여 특별히 일방촉탁으로 보아 수수료를 책정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목적의 가액을 쌍방 촉탁으로 보아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9) 유언 공정증서(규칙 제22조)**

- ① 포괄 유증이나 소액 유증(예컨대 금 5천만 원 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유증)인 경우 결격사유 조회, 유언의 취지 확정, 재산 관련 서류 검토 및 증서 작성 등 업무량 및 서류 보존기간이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의 보존기간의 2배(20년)인 점 등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몇 만 원)가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모든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기본수수료로 30만 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유언은 단독행위이나 유언 공정증서 촉탁행위는 유언자 이외에 증인 2명도 촉탁서 및 증서에 서명·날인하므로 사실상 쌍방 촉탁에 의한 증서 작성과 유사하므로 수수료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 ③ 출장비는 현재의 물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일당, 여비 등 출장비는 기름 값, 톨게이트 비용 등 부대비용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청년 변호사의 상담료가 시간당 최소 10~20만 원(대형로펌의 경우 보통 30~100만 원 등 다양함)임을 고려할 때 10년 차 이상의 공증인 일당을 4시간 이내 최소 50~100만 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200만 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10) 확정일자 날인(규칙 제22조)**

확정일자 1건당 업무량(완성된 문서 여부, 확정일자 계인 및 확정일자부 작성, 계산서 작성, 전자접수부 작성 등)이 많고, 확정일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수수료(1,000원)를 5,000원으로 인상하고, 개정 전 규칙에 있었던 장수초과 수수료(예컨대 4장 초과할 때 1장당 500원)를 받아야 한다.

**(11) 사서증서 등본 인증(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15조)**

국문 사서증서 등본 인증의 수수료(12,500원)는 보존 서류 찾고 검토하는 시간 및 복사 업무에 비해 비용이 비현실적이어서 최소 25,000원으로의 인상이 필요하고, 체계상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번역인증(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16조)

번역자격 증명서류, 번역인 협약서 및 신분증 등 첨부할 서류들이 많고, 서약서에 기명날인을 받는 등 업무량에 비해 수수료가 낮으므로 최소 30,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필요하고, 체계상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공정증서 작성(규칙 제2조)

공정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할 때, 현재 5단계 구간의 각 목적의 가액 및 수수료가 13년 전 거래 관행에 따른 금액이라 현재의 경제규모, 거래관행, 물가상승률 등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이고 비현실적이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로 개정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목적가액의 2000분의 3(0.15%)이 아닌 1만분의 20(0.2%)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3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규칙을 바탕으로 하되 앞에서 본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수료 체계나 산정방식에 있어 불합리성과 불명확성을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소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증인의 업무강도나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수수료는 그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규칙 등 개정안 건의

협회가 2019년 법무부에 건의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안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칙 개정안을 건의한다(별지1). 아울러 협회가 2021년 법무부에 건의한 공증 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역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산정 기준 개정안을 건의한다(별지2).

4. 규칙 개정안 건의

가. 규칙의 개정 방향

규칙 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은, 현행

별지 1.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b>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및 수표에 강제집행할 뜻을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lt;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gt;</p> <table border="1" data-bbox="221 836 552 1109"> <thead> <tr> <th>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th> <th>수 수 료</th> </tr> </thead> <tbody> <tr> <td>200만원까지</td> <td>1만1천원</td> </tr> <tr> <td>500만원까지</td> <td>2만2천원</td> </tr> <tr> <td>1천만원까지</td> <td>3만3천원</td> </tr> <tr> <td>1천500만원까지</td> <td>4만4천원</td> </tr> <tr> <td>1천500만원초과시</td> <td>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td> </tr> </tbody> </table> <p>[전문개정 1971. 2. 12.] [제목개정 2010. 2. 5.]</p> <p>&lt;신 설&gt;</p> <p><b>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b>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gt;</p>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p><b>제2조(법률행위 등에 관한 증서의 작성 수수료)</b>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0만원까지는 3만원</li> <li>500만원 초과 1천만원까지는 4만5천원</li> <li>1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7만원</li> <li>2천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는 9만원</li> <li>3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1만분의 20에 9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lt;제목 개정, 개정, 호 분류 신설&gt;</li> </ol> <p>② 법 제56조의2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어음 또는 수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을 준용한다.&lt;항 신설&gt;</p> <p><b>제3조(증서의 장수에 따른 부가수수료)</b>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더한다.&lt;제목 개정, 개정&gt;</p>	<p>민사소송등인자법 제2조를 참조하여 현실성에 맞게 13년 만에 수수료 구간과 수수료 액을 정비하고, 어음 수표 공정증서에 관한 것을 분리 규정함.</p> <p>13년 만의 수수료 현실화.</p>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b>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b> 법률 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2006. 12. 14.&gt;</p> <p><b>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b>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lt;개정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gt;</p> <table border="1" data-bbox="219 1473 552 1576"> <thead> <tr> <th>전유부분의 개수</th> <th>수 수 료</th> </tr> </thead> <tbody> <tr> <td>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4천400원</td> </tr> <tr> <td>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2천300원</td> </tr> <tr> <td>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td> <td>1천700원</td> </tr> <tr> <td>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td> <td>1천100원</td> </tr> </tbody> </table> <p>② 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p>	전유부분의 개수	수 수 료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p>2조의 수수료를 산정한다.〈항 신설〉</p> <p>③ 제2항의 경우에 서로 주종관계가 없는 부수된 법률행위가 여러 개인 때에는 각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주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항 신설〉</p> <p><b>제9조의2(물건 인도의 가액)</b>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 가액의 10분의 5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조문 신설〉</p> <p><b>제13조(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b> 법률 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5천만원으로 본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써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lt;개정〉</p> <p><b>제13조의2(집합건물관리단규약에 관한 증서)</b>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집합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하여 제2조에 따른다.〈제목 개정, 개정〉</p> <p>② 규약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분의</p>	<p>입법 불비이던 부분을 보완.</p> <p>13년 만의 수수료 현실화(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와 균형을 맞춤).</p> <p>집합건물 관련 수수료 규정을 단순화하고 현실화함.</p>
전유부분의 개수	수 수 료											
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4천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2천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1천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1천100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lt;개정 1991. 10. 7., 1996. 12. 31.&gt;</p>	<p>1로 한다.&lt;개정&gt;</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09 453 457 497">단지내 건물외 동수</td> <td data-bbox="457 453 560 497">수 수 료</td> </tr> <tr> <td data-bbox="209 497 457 526">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td> <td data-bbox="457 497 560 526">9천원</td> </tr> <tr> <td data-bbox="209 526 457 566">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td> <td data-bbox="457 526 560 566">4천원</td> </tr> </table>	단지내 건물외 동수	수 수 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단지내 건물외 동수	수 수 료							
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9천원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4천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p>	<p>③ &lt;삭 제&gt;</p>							
<p>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p>	<p>④ &lt;삭 제&gt;</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lt;개정 1991. 10. 7., 2010. 2. 5.&gt;</p>	<p>⑤ &lt;삭 제&gt;</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 6천원으로 한다. &lt;개정 1991. 10. 7., 1996. 12. 31.&gt; [본조신설 1986. 12. 24.] [제목개정 2010. 2. 5.]</p>								
<p><b>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b> 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86. 12. 24.,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gt;</p>	<p><b>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b> ①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경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1시간당 20만원으로 한다. &lt;개정&gt;</p>	<p>사실에 관한 증서의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수료가 극히 비현실적이어서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받는 시간당 자문료 및 공증사무소의 실정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86. 12. 24., 1991. 10. 7., 1996. 12. 31., 2010. 2. 5.&gt;</p> <p><b>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b>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액에 의한다. &lt;개정 2010. 2. 5.&gt;</p> <p><b>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b>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lt;개정 2010. 2. 5.&gt; [제목개정 2010. 2. 5.]</p> <p><b>제19조(위임장등)</b> ① 위임장, 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6. 12. 24.,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gt;</p> <p>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6. 12. 24., 1996. 12. 31., 2010. 2. 5.&gt;</p>	<p>② 제1항의 경우에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lt;개정&gt;</p> <p><b>제17조(법률행위와 사실에 관하여 하나의 증서로 작성하는 경우)</b>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하나로 작성되는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법률행위에 관한 수수료와 사실에 관한 수료를 합산한다.&lt;제목 개정, 개정&gt;</p> <p><b>제18조(사실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부가 수수료)</b>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은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준용한다.&lt;제목 개정, 개정&gt;</p> <p><b>제19조(거절증서 등)</b> 거절증서 작성의 수수료, 재산목록 작성의 수수료와 파산재산의 봉인 및 봉인 제거와 그 조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 재산의 조사나 봉인 또는 봉인 해제와 증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제15조의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lt;제목 개정, 항 삭제&gt;</p> <p>② &lt;삭 제&gt;</p>	<p>법률행위와 사실에 관한 것이 서로 부수적 관계가 아니라 병존하는 관계이므로 각 수수료를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임.</p> <p>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과 같은 취지임.</p> <p>거절증서 작성, 재산목록 작성이나 파산재산의 봉인 및 봉인 제거와 그 조서 작성은 일종의 사실에 관한 증서 작성이므로 제15조의 수수료와 같게 맞추고, 위임장, 수취서, 초정장은 그 증서 작성 서식이 없고 현실에서 실제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굳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초청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피초청인 5명까지 2만5천원으로 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2천원을 더한다. &lt;신설 1996. 12. 31.&gt;</p> <p><b>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 보고)</b>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목개정 2010. 2. 5.]</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③ &lt;삭 제&gt;</p> <p><b>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 보고 등)</b> ① 공증인이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수수료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억원까지는 100만원</li> <li>2. 10억원까지는 150만원</li> <li>3. 20억원까지는 200만원</li> <li>4. 30억원까지는 250만원</li> <li>5. 30억원 초과는 300만원</li> </ol> <p>&lt;개정, 호 신설&gt;</p> <p>② 총회 등의 의사록을 인증하기 위하여 결의 장소에 참석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감사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의 구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회사의 총회 등의 경우는 자본금</li> <li>2.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 이와 유사한 조합 총회 등의 경우는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사상의 사업비총액 또는 사업 대상 부동산의 공시지가 총액 또는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 또는 사업시행구역 토지 총가액의 2분의 1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li> <li>3. 기타 자산이 있는 사단법인의 총회 등의 경우는 자산의 총액</li> <li>4. 재단법인의 이사회 등의 경우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li> </ol> <p><b>제19조의3(유언의 특례)</b> ①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p>	<p>상법상 무액면 발행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으로 고침. 또한 5천만원까지 100만원이고, 13억 8,324만원 이상이면 300만원이던 수수료를 낮추어 1억원까지 100만원으로 하고 30억원이 초과하여야 300만원이 되도록 총액인의 부담을 완화함.</p> <p>기존에 지침으로 시행되던 것을 명문화하고, 기존에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문화 함.</p> <p>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절차가 복잡하고 포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b>제20조(인증행위)</b>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p> <p>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 2. 5.〉</p> <p>③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0. 2. 5.〉</p> <p>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같은 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 2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 10. 7., 1993. 2. 24., 2010. 2. 5.〉</p>	<p>수수료는 그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구별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금액이 30만원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0만원으로 한다.</p> <p>② 제1항 외의 유언에 관한 증서의 작성의 수수료는 유언사항마다 10만원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언을 하나의 증서로 작성할 경우에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합산한다 〈조문 신설〉</p> <p><b>제19조의4(위임계약 등의 증서의 특례)</b> 후견인이나 수임인의 사무가 피후견인이나 위임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 후견계약이나 위임계약의 급부의 가액은 재산의 가액을 최저로 한다. 〈조문 신설〉</p> <p><b>제20조(인증행위)</b> ①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p> <p>②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22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p> <p>③ 법률행위를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의 배액으로 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p> <p>④ 〈삭 제〉</p>	<p>유증의 경우에는 목적가액을 계산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언사항의 경우에는 부가수수료를 정함.</p> <p>후견계약(또는 위임계약) 공증 실무상 후견인(또는 수임인)의 업무의 대부분이 본인 재산의 처분 및 관리 업무인 점, 후견계약 증서의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수료가 극히 비현실적이어서 전혀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를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함.</p> <p>2010년 수수료규칙을 개정할 때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한 점, 13년 동안의 물가인상률, 거래 규모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13년 만에 수수료를 현실화 함.</p> <p>이는 등기에 필요한 의사록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촉탁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 의사록 인증 수수료 규정 등을 적용하면 될 것</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전문개정 1986. 12. 24.]</p> <p><b>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b>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lt;개정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gt;                      [전문개정 1971. 2. 12.]                      [제목개정 2010. 2. 5.]</p> <p><b>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b>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2. 5.]</p> <p>&lt;신 설&gt;</p>	<p><b>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b>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lt;개정&gt;</p> <p><b>제21조의2(대리권증명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b> 소송대리 또는 등기위임에 관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에 따른다.&lt;제목 개정, 개정&gt;</p> <p><b>제21조의3(사실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b>                      ① 법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법 제57조의2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다.                      ③ 제1항의 사실을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제1항의 수수료의 배액으로 한다.                      ④ 사실에 관한 것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하나로 만든(첨부 형식 포함)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는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료와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의 수수를 합산한다.</p>	<p>임. 결의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 등까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10만원으로 하더라도 일본의 의사록의 인증 수수료인 23,000엔에 비하면 1/2 수준에 불과함)</p> <p>위임장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던 것을 대리권증명에 관한 사서증서로 표현하고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수수료를 목적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에 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함.</p> <p>증전에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 수수료를 산정하는 실무관행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법률행위를 적은 사서증서의 인증수수료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조문 신설〉</p> <p><b>제21조의4(번역문 인증)</b> 국문이나 외국문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국문으로 번역한 문서에 대하여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p> <p>〈조문 신설〉</p>	<p>종전에는 지침으로 인정되던 번역문에 대한 인증 수수료를 수수료 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 신설함. 이론상 외국어로는 적은 사실에 관한 인증 수수료인 6만원과 같게 하여야 하나, 촉탁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3만원으로 정함.</p>
<p>〈신 설〉</p>	<p><b>제21조의5(사서증서 등본 인증)</b> ① 사서증서에 대한 등본의 인증의 수수료는 2만 원으로 한다.</p> <p>② 외국문으로 적어서 한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의 수수료는 4만원으로 한다.</p> <p>〈조문 신설〉</p>	<p>종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지침으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하였고, 수수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실화 함.</p>
<p>〈신 설〉</p>	<p><b>제21조의6(인증의 부가수수료)</b></p> <p>① 인증에 관하여는 그 인증서의 장수에 따라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p> <p>② 공증인이 보존하는 인증서나 인증서 사본에 부속서류를 연결한 경우에는 제3조의2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p> <p>③ 인증을 할 경우에 제3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3에서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5를 부가수수료로 받는다.</p> <p>〈조문 신설〉</p>	<p>종래 증서작성의 수수료와 연동하여 정한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명문화 함.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과 같은 취지임.</p>
<p><b>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b>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1. 10. 7., 2010. 2. 5.&gt;</p>	<p><b>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b>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4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당 1천원을 가산한다.&lt;개정&gt;</p>	<p>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기존에 있었던 장수 초과 수수료를 부활하여 장수 초과에 따른 간인 등 노력 비용을 추가함.</p>
<p><b>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b>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p>	<p><b>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b>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p>	<p>13년만의 수수료 현실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u>1만원을 더한다.</u>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3. 2. 24., 2010. 2. 5.&gt;</p> <p><b>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b>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u>4천원으로 한다.</u>                  [전문개정 2010. 2. 5.]                  &lt;신 설&gt;</p> <p><b>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b> ① <u>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u>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200원으로 한다.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1. 10. 7., 1993. 2. 24., 1996. 12. 31., 2010. 2. 5.&gt;</p> <p>②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1979. 6. 15.&gt;                  [제독개정 2010. 2. 5.]</p> <p><b>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b>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u>1회에 1천원으로 한다.</u> &lt;개정 1971. 2. 12., 1974. 8. 26., 1979. 6. 15.,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gt;                  [제독개정 2010. 2. 5.]</p>	<p>제5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u>2만원을 더한다.</u>&lt;개정&gt;</p> <p><b>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b>                  ② 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u>1만원으로 한다.</u>&lt;개정&gt;</p> <p>③ 영 제13조에 따른 통지의 수수료는 <u>5천원으로 한다.</u> &lt;항 신설&gt;</p> <p><b>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b> <u>공증인이 보존하는 공증서류를 근거로 정본이나 등본을 교부할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서의 정본의 교부 수수료는 1장에 2천원</li> <li>2. 증서·인증서의 등본의 교부 수수료는 1장에 1천원.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5백원</li> <li>3. 증서·인증서·인증서사본에 연철된 부속서류의 등본 교부 수수료는 1장에 1천원. 다만, 법 제54조제1항(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장에 5백원 &lt;개정, 항 삭제, 호 신설&gt;</li> </ol> <p>② &lt;삭제&gt;</p> <p><b>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b> 증서의 원본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정관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u>1회에 2천원으로 한다.</u>&lt;개정&gt;</p>	<p>법 제56조의4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입법 불비적이던 영 제13조에 따른 통지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p> <p>효력이 크게 다른 증서의 정본과 등본의 교부 수수료를 달리하고, 현실화함.</p> <p>위에서 제3조제2항을 삭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삭제.</p> <p>13년만의 수수료 현실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29조(일당, 여비 등)</b>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lt;개정 1974. 8. 26., 1979. 6. 15., 1985. 8. 1., 1993. 2. 24., 1996. 12. 31., 2006. 12. 14., 2010. 2. 5.&gt;</p> <p>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 2. 12.] [제목개정 2010. 2. 5.]</p>	<p><b>제29조(일당, 여비 등)</b>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1. 일당 1시간 당 10만원. 다만 1시간에 미달한 시간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 &lt;개정&gt;</p>	<p>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가 받는 시간당 자문료 및 공증사무소의 실정과 공증인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당을 현실화함.</p>
<p><b>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b>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2. 5.]</p>	<p><b>제30조(수수료 등의 증감액 불가)</b>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lt;제목 개정, 개정&gt;</p>	<p>본 규칙을 정하는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증액할 수 없도록 함.</p>
<p>&lt;신 설&gt;</p>	<p><b>제30조의2(수수료 등의 면제)</b> 이 규칙에 따라 수수료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면제한다. &lt;조문 신설&gt;</p>	<p>수수료 등의 백원 단위 미만을 면제함.</p>
<p><b>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b>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문개정 2010. 2. 5.]</p>	<p><b>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b> &lt;본문과 제1호는 현행과 같음&gt;</p> <p>1. &lt;현행과 같음&gt;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호에 따른 제1급 장애인&lt;호 신설&gt;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lt;호 신설&gt;</p>	<p>수수료 등의 면제 범위 확대.</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별지 2.

공증수수료 산정의 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7-14조(임대차계약 공정증서)</b> ① 임대차 계약(임차권 설정등기가 수반되는 계약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급부 가액은 다음 각호 금액의 합산액에 의한다.</p> <p>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p> <p>나. 보증금액(임대차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말한다)</p> <p>〈신 설〉</p> <p>②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의 급부 가액은 다음 각호 금액의 합산액에 의한다.</p> <p>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p> <p>나. 보증금액(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다.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의 총액. 다만, 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산 임대차는 月 차임의 1년분, 부동산 임대차는 月 차임의 5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제1항, 제2항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7-14조(임대차계약 공정증서)</b> ① ----- ----- -----임차인의 급부 가액은 다음 각호 금액의 합산액에 의한다. 임대인의 급부 가액 또한 이와 같다.</p> <p>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급하는 차임의 총액. 다만, 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산 임대차는 月 차임의 1년분, 부동산 임대차는 月 차임의 5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보증금액(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p> <p>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p> <p>② 제1항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p>	<p>임대차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급부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임차인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먼저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순서에 맞추어 규정함. 현행 규정은 임대인의 급부 가액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마치 사용 수익하게 할 급부의 내용이 목적물을 인도 하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만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는 등의 급부가 있고, 이러한 급부 가액은 일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것임.</p> <p>한편, 특별히 계약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아무런 급부가 없는 순수한 편무계약이 아니라면 원상회복계약을 포함하여 강화상 불완전쌍무계약이라고 일컫는 계약은 모두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다른 일방에 대한 의무사항(급부)이 있고, 그것의 가액은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등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수료 규칙 제11조는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임대인의 급부의 가액은 임차인의 급부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 결론적으로 현행 지침은 법리에 맞지 아니하여 고칠 필요가 있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b></p> <p><b>제7-15조(사서증서 등본 인증)</b> ① 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1건 당 12,500원으로 한다. ②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 등본에 대한 인증의 수수료는 1건 당 25,000원으로 한다.</p> <p><b>제7-16조(번역문 인증)</b> 외국어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는 25,000원으로 한다. 국문 번역문 인증의 수수료 또한 이와 같다.</p>	<p><b>제7-14조의2(위임계약 등 공정증서)</b> ① 위임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임인의 급부 가액은 위임사무의 가액으로 한다. 위임인의 급부 가액은 수임인의 급부 가액과 같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의 가액은 위임사무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본인으로서 직접 그 법률행위를 할 때의 급부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임인과 위임인의 각 급부의 합산액이 수임인에 대한 보수 총액의 배액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의 배액을 목적의 가액으로 본다. ④ 당사자 사이에 위임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위임계약에 대한 인증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로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수수료 규칙 제19조에 따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후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b></p> <p><b>제7-15조(사서증서 등본 인증)</b> ① ----- -----20,000원----- ②----- -----40,000원----- -----.</p> <p><b>제7-16조(번역문 인증)</b> ----- -----30,000원----- -----.</p>	<p>위임계약은 무상인 경우에도 불완전쌍무 계약으로 쌍방의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것이 위임계약의 목적의 가액이 됨. 수임인의 급부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위임인의 급부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급부의 가액이 위임계약의 급부의 가액을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임. 다만 본인으로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달리 앞으로 할 사항이므로 본인으로서 직접 법률행위를 할 때의 2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함.</p> <p>공증인이 위임장 공증에 대하여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음. 본인으로서 직접 법률행위를 할 때의 급부가액을 반영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사서증서를 직접 인증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그러한 내용으로 한 계약서에 대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그 위임장만 인증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증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음. 또한 위임계약의 일종인 후견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수수료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p> <p>수수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실화 함(수수료규칙 개정안 제21조의5와 동일하게 규정함).</p> <p>수수료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현실화 함(수수료규칙 개정안 제21조의4와 동일하게 규정함).</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신 설〉</p> <p><b>제7-20조(인증서 사본)</b>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공증인이 보관 중인 인증서 사본을 전자복사하여 교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1장당 500원으로 한다.</p>	<p><b>제7-19조의2(위임장에 대한 인증)</b> ① 소송대리 또는 등기위임에 관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제출할 위임장을 인증할 때에는 공증인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에 따른다.</p> <p>② 제1항의 경우가 아닌 위임장은 위임계약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으로 보고 제7-14조의2에 따른 위임사무의 가액을 기준으로 인증수료를 산정한다.</p> <p><b>제7-20조(인증서 사본)</b> ----- ----- ----- -----1,000원-----.</p>	<p>위임장의 유형별로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위임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함이 명백한 위임장의 수수료를 위임계약에 관한 위임인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위임장과 구분하여 목적 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현실화(수수료규칙 개정안 제21조의2와 동일하게 규정함).</p> <p>인증서의 등본의 교부 수수료를 1장에 1천원으로 개정한 수수료규칙 개정안 제24조 제2호에 준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p>
<p>〈장 신설〉</p>	<p><b>제4장 기 타</b></p>	
<p>〈신 설〉</p>	<p><b>제7-22조(의결장소에서의 검사)</b> ①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경우에 그 참석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p> <p>②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주택법」에 따른 조합이나 그와 유사한 조합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조합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총액, 사업 대상 부동산의 공시지가총액,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 사업 시행구역 토지 총가액의 2분의 1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p>	<p>재개발(재건축) 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조합 총회의 참석 검사 수수료는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에 준하는 조합원 출자기액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출자기액 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매우 번거로우므로 도정법 제31조 및 제35조 취지 등에 비취 일응 조합원 출자기액 총액의 최소분이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구역 토지 총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총액이나 사업 대상 부동산의 공시지가총액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규칙 개정안 제19조의2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함.</p>
<p>〈신 설〉</p>	<p><b>제7-24조(확정일자부여수수료)</b> 확정일자를 부여할 사서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p>	<p>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기존에 있었던 장수 초과 수수료를 부활하여 장수 초과에 따른</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p>〈신 설〉</p>	<p>에는 초과하는 1장당 1,000원을 더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 . . . . . 개정</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 . . . .부터 시행한다.</p>	<p>간인 등 노력 비용을 추가함(수수료 규칙 개정안 제22조와 동일하게 규정함).</p> <p>개정 지침의 시행일을 명확히 함.</p>

**2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2023. 4. 28.자)**

□ 공증인법 제13조 제3호에 규정된 임명 공증인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중 “끝나거나”라는 문구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개정안 자체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면서, 다만, 예컨대 공증인법 제35조 및 제61조의 각 기재사항 현실화, 제56조 어음 수표 원본 처리 방법, 제57조제2항 문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 등 공증실무상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2023. 4. 28.자로 제출함.

● 협회 의견서 원문

〈공증협 제2023-51호(시행 2023. 4. 28.)〉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제 목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 관련 의견 제출

1. 귀 위원회 문서번호 법사위-1277(시행 2023. 4. 25., 협회 접수 2023. 4. 25.)과 관련됩니다.
2. 협회는 귀 위원회가 의견제시 요청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에 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니, 동 개정법률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 관련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1부.

※ 붙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 관련 대한공증인협회 의견서

공증인법 제13조제3호 중 “끝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본 협회는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2. 그런데 공증실무상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예컨대 공증인법 제35조 및 제61조의 각 기재

사항 현실화, 제56조 어음 수표 원본 처리 방법, 제57조 제2항 문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이른바 후발 정관 인증제도 명문 도입, 증서의 경정제도 명시적 도입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으로 발의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3. 요컨대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체에는 찬성합니다만, 이왕 공증인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면, 우리 협회는 그 기회에 공증실무상 절실한 사항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는 점도 함께 적시합니다.
4. 이상과 같이 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우리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입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법무부와의 공증실무협의회에 법령 개정 등 건의(2023. 5. 26.자)

- 제22대 집행부는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② 서류검열 제도 개선, ③ 공증인 정년 폐지, ④ 증서경정제도 도입, ⑤ 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 도입, ⑥ 기타 사항 등의 공증실무 현안 개선 사항을

2023. 5. 26.(금) 개최된 법무부와의 공증 실무협의회에서 공식 건의함.

● 협회 건의서 원문

〈법무부와의 공증실무협의회 협회 건의 사항〉

1. 개요

- 협회가 법무부에 건의하는 주요 사항은,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② 서류검열 제도개선 건의, ③ 공증인정년 폐지 건의, ④ 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 도입 건의, ⑤ 증서정정제도 도입 건의, ⑥ 기타 사항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화상 공증 등 공증실무관련 건의임.

\* 공증인법 시행령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개정된 2010년 이래, 붙임자료 (1) 공증업무처리건수 변동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증사무소의 수수료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증서 작성 건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78.83% 감소(2010년 760,336건>>>2022년 161,001건)하였고, 인증부여 건수는 통틀어 동 기간 중

26.63% 감소(2010년 1,230,253건>>>2022년 902,608건)함으로써, 각 공증사무소마다 공증수수료 수입도 평균적으로 그만큼 감소하였음은 명백함(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그 건당 수수료가 1,000원에 불과하고, 일부 특정 공증사무소에서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가치가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함).

- 공증인의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이나 사무소 차임을 포함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공증인 사무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공증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붙임 자료 (2) 최근 물가변동 자료, 붙임 자료 (3)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붙임 자료 (4) 대한공증인협회 입주 건물 기준 공시지가 변화 추이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실질적으로 2006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2010년 동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개정 사항은 대부분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 {붙임 자료 (5)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정·개정 등 연혁 참조}].

- 특히,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가 정

하고 있는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 그 가액 기준은 연혁적으로 볼 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가 정하는 소가 기준과 그 궤를 같이해 왔는데,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경우 2006년에 “2천만 100원”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반면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는 2014. 7. 1.부터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음.

- 이에 협회는 공증인들이 품위를 지켜가며 국가 사무인 공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수수료 규칙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함.

### 3. 서류검열 제도개선 건의

- 현재 공증사무의 서류검열은 위반사항 적발 시 징계를 전제로 하여 마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신문을 받는 듯한 분위기에서 고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주로 오탈자, 간인 누락과 같은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는 등 제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서류검열은 예방 사법인 공증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와 국가 사무의 통일적 집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지금의 제재 위주

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미리 출석 요구를 고지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서류검열은 검열 일자를 예고 받지 못한 채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근무 중에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한 두 명의 공증인 보조자만을 두고 있는 공증사무소에서는 사실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음. 또한 1년 중 언제 서류검열이 올지 알 수 없어 공증인 보조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검열제도에 사전 고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4. 공증인 정년 폐지에 대한 건의

#### ○ 개요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정신적·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고령의 공증인을 위해, 현행 75세의 공증인 정년 규정을 폐지해야 함.

#### ○ 공증인 정년 규정에 대한 연혁

- 1961년 제정된 공증인법 : 정년은 70세 (제15조 제2항).
- 1970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 정년 규정 삭제

-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이외에 변호사의 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공증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현재 공증인이 70세에 달한 때에는 당연 퇴직하여야 한다는 정년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임.
  - \* 인가공증인이 최초 도입되면서 임명공증인의 정년 규정이 폐지.
- 2009년 2월 6일 개정 : 정년 부활. 정년은 75세(제15조 제3항, 제15조의4 제3항)
  -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 다만 정년 규정에 대한 시행일은 2012년 2월 7일로 함.
- 2012년 1월 17일 개정 : 부칙을 신설하여 앞의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증인의 정년을 80세로 함(부칙 제3조의2).
- 개정 이유 :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의 퇴직으로 인한 혼란과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17년까지는 정년을 80세로 하려는 것임.

- 2017년 12월 31일 이후 현재 : 정년은 75세.

○ 정년 규정에 대한 검토

- 변호사법과 같이 공증인에 대한 정년 규정을 폐지해야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음. 1970년 12월 31일 공증인법 일부 개정 시 인가공증인 제도(변호사 겸업 공증인)를 도입하면서 공증인법에 둔 임명공증인에 대한 정년 규정을 삭제한 이유도 변호사법의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정년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음. 왜냐하면,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가공증인은 정년과 관계없이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도 정년 규정을 둘 필요는 없어 보임. 왜냐하면,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명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고(공증인법 제14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임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공증인법 제15조), 결국 면직과 재임명 불허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고령의 공증인을 공증사무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컨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공증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고령의 공증인을 획일적으로 은퇴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이 건강과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적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나아가 오랫동안 공증 사무를 처리한 고령의 공증인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숙련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공증사무에 대한 정확성·적절성·신뢰성이 항상 침해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는 한, 공증인에 대한 정년의 제한은 없어야 할 것임.

## 5. 공증인 징계제도의 개선

### ○ 개요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한공증인협회의 공증인 징계에

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협회의 지도·감독과 자정(自淨) 능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건의임.

### ○ 공증인에 대한 감독과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을 감독하고(제78조),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함(제84조).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공증인법 및 공증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제82조).

### ○ 공증인에 대한 감독과 징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거의 대부분 법무부의 서류검열을 통해 공증인에 대한 감독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공증인협회 내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3년 간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무부의 소수 인력이 전국에 걸친 모든 공증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증사무를 직접 적발·

감독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자체적인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공증인협회를 통한 공증사무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규정에 대한 검토

(1) 현행 변호사법의 규정

-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음(변호사법 제86조).
-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둠(제92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 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제97조),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함(제98조의4).
-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100조).
-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함(제98조의5).

(2) 위 규정에 대한 연혁

- 1993. 3. 10. 변호사법 일부를 개정하여(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73조에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규정 등을 둠(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함.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는 변호사징계권 중 공소제기사건 및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등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새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함.
  - \* 개정 전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행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였음.

○ 건의

- 앞에서 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 앞의 검토사항을 근거로 하여, 대한공증인협회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징계위원회와 같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도입하는 의견을 건의함.
- \* 대한공증인협회의 자율권을 활성화하고, 협회의 자정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

증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감독권의 일부를 협회장에게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6. 증서경정제도 도입 건의

- “증서의 경정” 제도 신설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사집행절차의 효율성 제고 -

증서 작성 중에는 공증인법 제37조에 따라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촉탁인이 증서(유언공정증서, 일반 공정증서, 인증서 포함)를 발급받은 후에 오타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의 실무례임(입법의 불비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유추적용하여 증서의 경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민사소송 판결문의 경우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1조). 그러나 공증인법에는 위 판결의 경정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서 작성 후 주민등록번호의 단순한 오타 등 명백한 오기를 발견해도 공증인이 증서의 내용을 경정할 수 없어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단순한

오타로 인한 집행관의 보정명령 발령이나 보정불가로 강제집행절차가 중단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증서의 경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기 타(모바일 신분증, 화상 공증, 공증실무 관련 건의)

(1) 모바일신분증 지침 관련

○ 이미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계속 확대될 예정임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인정할 경우 신분증사본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지침이 없기에 그에 대한 지침 마련을 건의함.

(2) 신분증인식시스템 도입 건의

○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오래 전 사진이라, 공증인법 제27조에 따른 ‘촉탁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때 전국의 주민센터에 설치된 지문인식 시스템을 공증사무소에 도입하여 촉탁인 확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공증 이용 편리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화상공증 지침 마련 관련**

-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화상 공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 ① 번역공증을 화상 공증으로 할 경우 서약인의 전자서명을 어느 부분에 할 지에 관한 통일된 지침이 없어 각 사무소마다 다르게 시행 중이고, ② 의사록 공증을 화상 공증으로 할 경우 주주명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 진위 여부 확인 방법과 ㉡ 제출 방법[예, 축탁문서 이외 각 첨부서류에도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첨부서류 원본을 우편 제출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사무소 별로 통일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지침 마련을 건의함.

**(4) 서명날인방식 관련 건의**

- 공정증서에 공증인 외의 참석자는 서명날인 대신 서명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공증 이용 편리성 제고
  - 공정증서(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약속어음 공정증서(법 제56조의2 제6항 ; 이는 준용규정이므로 개정할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개정.
  - 어음법상 약속어음 발행인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함. 은행 등 금융권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서명만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 약속어음 공증도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아닌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공증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반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유언자와 증인 포함) 또한 마찬가지임. 서명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이 공증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간인 외 천공방식 인정 건의**

-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게 되어 있고, 천공은 불가함(공증인법 제38조 제5항, 제59조). 국민들이 공증할 사문서를 작성할 때도 당사자들이 간인을 하여야 함. 증서가 수십 장, 백여 장 이상일 경우 직인 대신 천공을 이용하여 국민의 공증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공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이른바 후발 정관 인증 제도 명시적 도입**

- 현재 공증실무상 원시 정관이 아닌 정관(이하 '후발 정관'이라 함)에 대하여는 첨부한 정관에 대한 확인서를

인증하는 형식으로 인증하고 있음. 이는 매우 편법적이라 볼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 법인의 정관은 당해 법인의 구성원 등에 대한 일종의 자치법규로서 그 규정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와 함께 법인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여야 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7) 문서의 등본 인증으로 개정**

- 공증인법 제57조 제2항의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라는 부분을 “문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그 문서의 원본과 대조하여”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현재 공증실무상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공문서의 등본에 대하여는 인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공문서의 등본은 공문서를 (사인 등이) 베껴 적거나 복사한 것으로서 사문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문서의 등본에 대하여도 사서증서의 인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실적으로 여권 사본 등을 공증 받아서 해외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이에 대한 사서증서 등본 인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8) 공증인법 제35조 제2호 개정**

- 공증인법 제35조(기재사항)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2호 “촉탁인의 주소·직업·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 ‘직업’과 ‘나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직업과 나이는 거의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촉탁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대표자 성명·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

**(9) 공증인법 제58조 개정**

- 공증인법 제58조는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참여인의 서명날인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참여인의 (서명)날인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고, 특히 영문 인증의 경우에는 참여인의 서명날인을

- 요구하는 것이 실무와 일치하지 않음.
- 이에 공증인법 제58조를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공증인법 제58조 중 “공증인과 참여인이” 부분을 “공증인이” 또는 “참여인의 서명을 받아 공증인이”로 개정을 건의함.

**(10) 공증인법 제61조 제2호 개정**

- 공증인법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는,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즉, 인증부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증인법 제61조 제2호 중 “촉탁인” 부분을 “촉탁인 및 그 대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인증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짧은 반면 ‘보존 기간 만료된 후 인증서가 폐기된 상태’에서 촉탁인이 ‘어떤 경위로 당해 사서증서가 인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어떤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11) 공증인 명칭 변경**

- 공무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공증인’이라는 명칭을 ‘공증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상당수의 국민들이 ‘집행관’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공증인’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 편집자 주**  
붙임(1)부터 (5)까지의 자료는 상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2회 건의 중 ☐ 제1차 건의(2023. 2. 22.자) 붙임 자료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 공증업무 질의·회신

### ❶ 공증인 수수료 청구의 소 관련 사실조회 회신(2023. 1. 19.자)

#### □ 질의 내용(원문 중 발췌)

#####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 업무를 위한 참석 인증의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한 인증 수수료와 별도로 공증인 출장 수수료를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사실조회사항

#### [사건에 대한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4. 18.경 2021. 4. 20.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정기총회 소집공고문을 수령하고, 정관에 비추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정기총회에서 등기 사항인 조합규약 개정의 건(3호 안건), 조합임원 연임의 건(4호 안건), 법인 등기를 위한 기 선출된 임원 승인의 건(5호 안건)이 각 부결됨으로써 변경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대부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 조합 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 의뢰를 받아 위 정기총회에 출장 업무를 수행했으나, 위 3호 내지 5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인증을 해아할 총회 의사록이라는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참석인증을 의뢰 하였던 조합장은 경질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야간에 18:00부터 21:00까지 3 시간 동안 회의진행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피고 조합의 조합장(○○○)은 결과물을 창출(정관 및 임원 변경등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무 제공의 대가인 출장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증 출장 수수료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질의 사항]

가. 조합 총회 의사록에 대한 참석인증을 의뢰받은 공증인이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총회 회의록 인증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출장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원고가 피고 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호 내지 5호 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정관 및 임원 변경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총회 의사록 인증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로 총회 의사록인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위와 같이 출장수수료로 250만 원만을 피고에게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증인 출장수수료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할 수 있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로 총회 회의록(※ 주: 의사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인증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출장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증인이 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부결되어 변경등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총회 의사록 인증을 위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로 총회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출장수수료로 250만 원만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공증인에게 위 출장수수료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는 것인바,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수수료 외에 요구하는 ‘출장수수료’라는 것은 공증인이 의사록을 인증하기에 앞서 총회 등의 의결장소에 출석하여 그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는 것에 관한 수수료 이른바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하에서는 이런 전제하에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5호(시행 2023. 1. 19.)>

1. 사실조회 내용의 취지

귀 법원의 사실조회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에 대한 참석인증을 의뢰받은 공증인이 조합에

2. 참석인증을 위한 의결장소에서의 검사수수료 관련 규정

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

(1)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상법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으로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26조(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나.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검사의 수수료)

- ①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수수료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해설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이른바 참

석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인증을 하기에 앞서 선행적으로 공증인이 의결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때 의결장소에서의 검사는 촉탁인이 제출한 사서증서를 대상으로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공증사무소에서의 인증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공증인의 직무입니다. 의결장소에서의 검사는 공증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인증 그 자체의 직무보다 시간도 훨씬 많이 소요되고, 업무수행에 따르는 어려움도 훨씬 많으며, 그에 따른 공증인의 부담도 훨씬 큼니다. 의결장소에서의 검사를 인증에 완전히 흡수되는 직무로 볼 수 없는 이유이고, 따라서 그 수수료도 인증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장소에서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참석인증을 위한 의결장소에서의 검사수수료는 의결 장소에서의 검사와 가장 유사한 공증인의 직무로 평가되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에서의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수수료 규정 즉,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인이 총회 등의 의결장소에 출석하여 검사한 경우에 그 검사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는 설립될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주: 이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의 액을 의미하므로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는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공증수수료 등 산정의 기준 제21조(정관 인증) “규칙 제21조 제1항의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참조)의 규모와 연동하여 수수료가 산정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법인이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법무부 유권해석은 없고, 공증실무상으로는 ①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최저 기준인 5,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검사의 수수료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조합의 출자금 총액 내지 사업비 총액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가장 유사한 사항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만, 공증실무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2017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후자와 같은 취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 등의 경우에는 통상 그 조합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총액 또는 사업대상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 또는 출자금 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주: 이렇게 계산하면 재건축조합 등의 총회에 대한 참석 검사 수수료는 대부분 300만 원이 됨). 이 건 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에 공증인이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그 수수료는 그 사업비 총액이나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의 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공증인이 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부결

되어 변경등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총회 의사록 인증을 위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로 총회 의사록 인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고, 출장수수료(※ 주: 실질적으로는 참석 검사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로 250만 원만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공증인에게 위 출장수수료(※ 주: 실질적으로는 참석 검사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한다면, 촉탁인의 귀책사유로 의사록 인증까지는 하지 못하였지만 공증인이 공증사무소 밖으로 출장하여 조합 총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검사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경우, 공증인으로서의 의사록인증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수수료(3만 원)를 청구할 권리는 없겠지만, 총회에서의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조합은 공증인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액은 조합의 실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서증서 관련 공증수수료 질의 회신 (2023. 1. 25.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 영문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수수료 문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에 대한 자기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 A법인에 대한 본인 지분이 얼마 인지를 확인하는 진술서
  - 2) 타인에 대한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 A법인이 B제품의 판매업자임을 확인해 주는 B제품 제조업자의 진술서
  - 3) 주주명부(주식수/1주당 주식금액/소유 주식 금액/지분을 모두 기재된 경우)
  - 4) 주주명부에 지분율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정관에 자본금이 나와 있는 경우 지분율만 표기된 주주명부에 대한 공증 수수료를 산정불능으로 51,500원(영문의 경우)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7호(시행 2023. 1. 25.)〉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2. 11. 03.자 질의

취지의 요지는, “1) 본인에 대한 자기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컨대 A법인에 대한 본인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진술서, 2) 타인에 대한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컨대 A법인이 B제품의 판매업 자임을 확인해주는 B제품 제조업자의 진술서, 3) 주주명부(주식수/1주당 주식 금액/소유 주식금액/지분율 모두 기재된 경우)인 영문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 수수료료가 얼마인지에 관한 것과 4) 주주명부에 지분율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정관에 자본금이 나와 있는 경우 지분율만 표기된 주주명부에 대한 공증수 수료를 산정불능으로 51,500원(영문의 경우)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 산정에 관한 총론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출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지침 및 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5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20조 제1항 각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란 법률행위의 목적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로 발생, 소멸, 변경되는 권리나 의무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관계없이 공증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정관이나 의사록 인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참조), 위임장(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이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장 등의 경우) 인증 및 번역문 인증(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7조 참조) 등이 그 예입니다.

한편, 사서증서에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행위 주체의 의사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준법률행위적 의사를 적은 것도 있는바, 그 인증 수수료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준하여 준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가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규정 해설

귀 인가공증인이 질의한 구체적인 각 사서증서 별로 공증 수수료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자기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컨대 A법인에 대한 본인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진술서

진술서(또는 확인서) 인증의 수수료는 문서의 작성명의자, 내용 및 촉탁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진술서(또는 확인서)의 작성명의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그 법률사실을 확인하는 것인 때에는 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발생 등에 관한 진술서(또는 확인서)에 대한 인증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제20조에 의하여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A법인에 대한 본인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진술서는 본인의 출자(법률행위)에 따른 자신의 지분에 관한 것이므로 지분가액이 곧 그 목적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2) 타인에 대한 진술서(또는 확인서) 예컨대, A법인이 B제품의 판매업자임을 확인해주는 B제품 제조업자의 진술서

타인에 대한 진술서(또는 확인서) 즉,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지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어서 작성한 진술서(또는 확인서)는 앞에서 본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의사를 적은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의 반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이른바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에 대응(對應)하는 사서증서도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수 있는 사람(촉탁인)은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사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진술서(또는 확인서)는 작성자가 제3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이같은 증서에 관한 인증의 수수료를 정한 바가 없어 오롯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같이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는 진술서나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작성자)의 경험에 비추어 틀림 없는 사

실임을 서약하는 의미가 있고, 이에 대하여 공증을 촉탁하는 의사에는 만일 이같은 사실이 허위일 경우 장차 그로 인한 책임(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용인하겠다는 의사 즉, 준법률행위적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 준법률행위적 의사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통상의 준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법적 효과의 가액을 목적가액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준법률행위마다 그 가액이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진술서나 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목적 가액은 항상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목적 가액은 언제나 2천만 1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참조).

따라서 증인과 같은 지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의 인증수수료는 국문인 경우에는 25,750원이고, 영문인 경우에는 51,500원입니다(사본 제작·보존 수수료 및 장수초과 수수료는 별도).

귀 법무법인에서 질의한 'A법인이 B제품의 판매업자임을 확인해주는 B제품 제조업자의 진술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나, 만일 증인과 같은 제3자의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3) 주주명부(주식수/1주당 주식금액/소유  
주식금액/지분율 모두 기재된 경우)

주주명부는 주주의 현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소유주식수가 기재되는 것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며(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므로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단지 그 기재만으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자격수여적 효력), 회사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의결권, 배당금지급,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면 설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면책됩니다(면책적 효력).

따라서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주주에게 발급한 주주확인서 등은 법률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의 지위에서 확인한 서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마치 물건보관자가 물건을 맡긴 자

에게 보관증을 작성교부하는 것과 같이 주식발행회사가 주주의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의사 표시에 준하여 총주식의 가액을 법률 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하여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주주명부에 지분율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정관에 자본금이 나와 있는 경우 지분율만 표기된 주주명부에 대한 공증 수수료를 산정불능으로 51,500원(영문의 경우)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명부는 총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에 지분율만 표기되어 있고, 별도의 정관에 자본금이 나와 있는 경우 지분율만 표기된 주주명부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인증을 받을 사서증서인 주주명부만으로는 총주식의 가액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상적으로 별도의 정관에는 현재의 자본금 총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로 보완하여 총주식의 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가액으로 하여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지 산정불능으로 목적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고 공증 수수료를

51,500원(영문의 경우)으로 징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귀 인가공증인이 질의한 각 사서증서 종류 별로 공증 수수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질의 내용에서 주어진 제약된 정보 하에서 판단한 원칙적 개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각 사서증서 전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찰적으로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각 사서증서 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③ 부당이득금 관련 사실조회 회신(2023. 2. 20.자)**

**□ 질의 내용(원문 중 발췌)**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가. 피고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승낙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신청합니다.
- 나. 공증을 한 법무법인 ○○이 현재 폐업

중입니다.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9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8조의8 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 등을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사항

- 가.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법인 ○○(□□시 △△구 ▽▽대로 #####, A빌딩 #층)에서 공증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를 또는 이 서류들의 마이크로 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등 어떠한 형태로든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나. 대한공증인협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법무법인 ○○이 공증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원고 ◇◇◇이 2019. 8. 30.경 □□시 △△구 ▽▽대로 #####, A빌딩 #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에서 소외 ○○○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사본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20호(시행 2023. 2. 20.)〉

- 1. 귀 법원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

가단#####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2023. 1. 26.자 사실조회서(협회 접수 2023. 1. 31.)와 관련됩니다.

- 2.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법 제77조의 9에 따라 공증인을 대신하여 공증서류를 통합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공증인협회는 통합보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가 취소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증서류에 대하여 협회가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요청한 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 3. 참고로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서류인수인계 내역은 인터넷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의 ‘사무소 찾기’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한바, 협회가 인가취소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의 서류인수인계 내역을 검색한 결과, 붙임 이미지와 같이 연도별 공증서류가 총 6개의 공증사무소로 인수인계된 것으로 조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색된 결과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공증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 내역을 찾고자 하실 경우에는 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담당부서 : 법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편집자 주]**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인가취소된 공증인가 ○○  
법무법인의 서류인수인계 검색 결과 화면 이미지는  
생략함.

**4 의사록 참석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2023. 2. 20.자)**

**□ 질의 내용(원문 중 발췌)**

1.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의사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다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한 경우(통상 참석인증이라 함)에 법인의사록 인증 지침 제13조에 의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산출한 검사의 수수료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만 징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 밖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당, 여비도 징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증실무는 참석인증 시 검사의 수수료와 인증의 수수료만을 받는 공증사무소도 있고, 그 밖에도 일당, 여비 등을 따로 받는 공증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증사무소마다

받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 실무상 애로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통일된 업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아무쪼록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저희 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공증사무소에도 이를 전파하여 본격적인 주총시점이 오기 전에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21호(시행 2023. 2. 20.)〉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3. 2. 16.자 ‘수수료 관련 질의’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법인의사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다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한 경우(통상 ‘참석인증’이라 함)에 법인의사록 인증 지침 제13조에 의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산출한 검사의 수수료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만 징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 밖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당, 여비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참석인증 촉탁 시의 공증인 수수료 관련 규정

의사록 참석 인증 촉탁 시의 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 “…… 그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규칙 제13조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다만, (이하 생략)”

같은 규칙 제26조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사항에 가장 유사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한 액으로 한다.”

같은 규칙 제27조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규칙 제21조 제2항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같은 규칙 제29조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철도임 또는 선임  
1등 여객운임. 다만 (이하 생략)
3.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  
실비액
4. 숙박비  
실비액

같은 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3. 참석인증 촉탁 시의 공증인 수수료와 본건의 쟁점

법인 등의 총회 참석인증 촉탁 시의 공증인 수수료는 위 가항에서 살핀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크게 (참석)검사

의 수수료와 의사록 인증 수수료와 출장 비용(일당, 여비, 실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참석)검사의 수수료라는 개념 자체에서 출장이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따로 출장비용을 받는 것은 이중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 4. 출장 비용 적용 거부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본직의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공증인법 제 17조 제3항 본문 참조),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예컨대, 대어 금고의 개피 점검 등과 같은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작성과 의사록 인증 관련 참석 검사의 경우)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예컨대,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법 제56조 제2항 전단)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에서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일당과 여비 및 실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사실실험 공증 등에만 적용하여야 하고, 실제로 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사록 인증 관련 참석 검사의

경우나 병상에서의 유언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출장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의 출장비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가 공증실무상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는 경우가 없게 하는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적절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의사록 인증 관련 참석 검사의 경우나 병상에서의 유언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자체에 출장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의 출장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나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공증인법 제16조의 직무집행구역 적용도 받지 않는바(공증인법 제56조 제1항과 제66조의2 제4항 각 참조), 서울이나 제주도에 공증사무소를 둔 공증인이 울릉도에 참석검사나 유언 공증을 위하여 출장 가야 하는 경우(공증인법 제4조 제1항 참조) 실제로 들어간 출장 비용이 참석 검사 수수료나 할증 유언 공증 수수료보다 더 클 수도 있는데, 이를 따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는 참석인증을 위하여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그 검사의 수수료’로서 출장비용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장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 조사·보고에 관한 것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참석 검사 수수료를 정했다는 점에서도 출장비용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한다는 것은 통상 출장을 수반하지만 만일 공증사무소에 딸린 회의실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출장을 수반하지 않고도 의결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는 ‘검사의 수수료’라는 공증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장 비용

(일당, 여비 등)은 시간적·지리적 상황에 따라 실제로 드는 구체적 비용 즉, 실비 변상의 개념으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따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5. 결 어

법인의사록 인증을 위하여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다음,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한 경우(참석인증)에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에 의거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산출한 검사의 수수료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수수료(3만원) 및 결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소 밖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당, 여비 등을 별도로 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⑤ 영문 경력증명서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2023. 2. 28.자)

###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공증사무소마다 아래 영문경력증명서 사서증서 인증료에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Experience Certificate(경력증명서)**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경력기간 :                      근로내용 또는 주업무내용 :

A Co., Ltd. proves that the contents of the career certificate for the above person are true.  
주식회사 에이는 상기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함.

This is verify that the person listed above had been employed with this company as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위에 나열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 정보로 이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주식회사 에이  
대표이사 홍길동 (법인인감날인)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28호(시행 2023. 2. 28.)〉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3. 2. 9.자 ‘사서증서 (영문 경력증명서) 인증(공증)수수료 문의’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문서 작성 명의자인 촉탁인 회사의 직원에 관한 영문 경력증명서에 대한 인증 수수료 얼마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 산정에 관한 총론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출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미비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지침 및 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에 따라 5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및 제20조 제1항 각 참조).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란 법률

행위의 목적을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로 발생, 소멸, 변경되는 권리나 의무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인증 수수료는 외국문 사서증서인 경우 51,500원이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관계없이 공증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도 있는데, 정관이나 의사록 인증(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참조), 위임장(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이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장 등의 경우) 인증 및 번역문 인증(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제7조 참조) 등이 그 예입니다.

### 3. 질의한 사서증서의 인증에 대한 공증 수수료

무릇 진술서나 확인서 또는 증명서 등이 작성명의자 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면 되고, 진술서나 확인서 또는 증명

서 등이 문서의 작성 명의자가 아닌 타인의 법률행위 등을 목격한 사실 등을 담고 있고 작성명의자 본인의 법률행위를 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법률행위 목적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냥 목적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그 목적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하여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 질의 사안인 영문 경력증명서는 작성명의자 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내용에서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그 목적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하여 공증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 인가공증인이 질의한 문서작성 명의자인 촉탁인 회사의 직원에 관한 영문 경력증명서는 문서작성 명의자가 특정의 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서작성 명의자인 촉탁인 회사가 한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그 목적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영문 인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 제1항, 제2조,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51,500원이 됩니다. ☒

**6 주주총회 참석인증 질의 회신(2023. 3. 22.자)**

**□ 질의 내용(원문)**

주주총회 참석인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의 양이 많은데 이 주주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꼭 받아야 한다면 파일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정족수 집계 자료로 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사한 것으로 족하므로 따로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3.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35호(시행 2023. 3. 22.)〉

**1.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2023. 3. 13.자 ‘주주총회 참석인증에 대한 질의’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1.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의 양이 많은데 이 주주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꼭 받아야 한다면 파일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 2. 정족수 집계 자료로 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사한 것으로 족하므로 따로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3.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참석인증 시 필요 서류 등 관련 규정**

의사록 참석 인증 시의 필요 서류 등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법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의사록 인증 요건) ①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법”

③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27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같은 지침 제4조(주주인 사실 등의 증

명 방법) ① “공증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하여 주주인 사실 및 의결정족수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주명부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집행한 대표나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신청인 주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2.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3.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 일” ③ “제1항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명칭 및 그

주식 수,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 의안에 찬성한 주주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존재로 그 기재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

증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총수만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나 전자주주명

부의 등본이나 출력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0조(참석인증을 위한 검사)

① “공증인은 위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의사록 인증을 할 경우에는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회의장이나 주변에서 고성과 폭언 등 소란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소란행위의 경위를 관계인에게 물어 볼 수 있다.” ④ “공증인은 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지침 제12조(참석인증에서의 부속서류) ① “공증인은 제10조의 검사를 할 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의 증명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의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 포함)의 집계에 관한 자료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존한다.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같다.” ②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후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경우 공증인은 인

증서 다음에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신분증명서 사본,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진술서, 규칙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허가서(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한 경우에 한함),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차례로 철한 뒤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료 및 위 제4조 제4항의 자료는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존하여야 한다.”

### 3.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의 양이 많은데 이 주주명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꼭 받아야 한다면 파일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주명부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집행한 대표나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신청인 주주에 의해 작성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수 주주의 존재로 그 기재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총수만 기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나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4항 참조).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의 출력본이 방대함을 고려하자면, 전자주주명부의 출력본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 등본 파일 형식으로 제출 받더라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존하여야 합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 참조).

**4. 정족수 집계 자료로 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정족수 집계 자료로 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사한 것으로 족하므로 따로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증인은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하고 제출받았거나 법인에 의하여 그러한 자료가 임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제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2항 각 참조). 공증인은 참석인증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소집통지서, 소집공고의 증명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자료, 출석 주주 및 그 주식수(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대리인에 관한 사항 포함)의 집계에 관한 자료 및 회의 안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 인증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존하고,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1항 참조).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존하여야 합니다(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3항 참조).

정리하자면,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개회에서 폐회에 이르기까지 회의의 진행상황, 결의의 성립 여부를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출석 주주의 성명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위임장과 의결권의 수를 집계한 서류 포함)를 제시하게 하고 제출받았거나 법인에 의하여 그러한 자료가 임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사한 것으로 족하므로 따로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을 제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제1항의 자료는 참석인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부속서류는 아니지만, 공증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받은 경우나 촉탁인이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것도 부속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한 것이고, 의결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결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공증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장 등 관계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목격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일 회의의 성립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증인도 관련 자료(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를 제시하게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해설 제23쪽 참조)}.

#### 5.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

참석인증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을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및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참조). 의사록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 6. 결 어

귀 공증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 하자면,

- (1) 상장회사의 참석인증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에 의결권 있는 주주수와 찬성 주식수의 총수만 기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

여금 제2항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나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나, 전자주주명부 등본 파일 형식으로 제출 받더라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 (2) 참석인증의 경우 정족수 집계 자료로 주주총회 참석인의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 등의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장 등 관계인이 결의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목격하는 등 주주총회 현장에서 검사한 것으로 족하므로 반드시 따로 참석장, 주주총회 위임장을 제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3) 참석인증의 경우에도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 사들의 개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7 의사록 일부 인증 관련 질의 회신(2023. 3. 24.자)**

**□ 질의 내용**

(1) 사례

① 주총 안건

- 1호 안건 : 재무제표승인의 건
- 2호 안건 : 이사해임의 건
- 3호 안건 : 감사선임의 건

② 주총 결과

- 1호 안건 : 가결이 있었으나 당회 감사가 주총에 출석해 감사절차 흠결을 주장하고, 실제 감사보고절차도 없이 가결이 이루어짐.
- 2호 안건 : 부결
- 3호 안건 : 가결

(2) 질의 사항

법무부의 법인 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처리지침 제8조의 제1항 제2호에 대한 지침해설에서는 “결의 사항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부인증이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 따른 경우 위 사례 안전 전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 ①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없이 가결이 이루어진 위 사례 3호 안전인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서 위 법인은 감사선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며,
- ② 법령과 정관에 위반 없이 가결된 안전(등기할 사항인 경우)을 단지 등기를 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 ① 일부 인증 불허의 원칙에 따라 위 1호 안전의 법령위반을 근거로 안전 전부에 대하여 의사록 인증을 거부해야 하는지?
- ② 달리 일부 인증 등의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회신을 구하고자 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39호(시행 2023. 3. 24.)>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주주총회 제1호 안전이 재무제표승인의 건, 제2호 안전이 이사해임의 건, 제3호 안전이 감사선임의 건인데, 주주총회 결과 제1호 안전은 가결이 있었으나, 당회 감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절차 흠결을 주장하고, 실제 감사보고 절차도 없이 가결이 이루어졌고, 제2호 안전은 부결, 제3호 안전은 가결된 사례의 경우에, 법무부의 법인 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8조의 제1항 제2호에 대한 지침해설에서는 ‘결의 사항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부인증이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른 경우 위 사례 안전 전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첫째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없이 가결이 이루어진 위 사례 제3호 안전인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서 위 법인은 감사선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며, 둘째 법령과 정관에 위반 없이 가결된 안전(등기할 사항인 경우)을 단지 등기를 위하여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바, ① 일부 인증 불허의 원칙에 따라 위 제1호 안전의 법령위반을 근거로 안전 전부에 대하여 의사록 인증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 ② 달리 일부 인증

등의 방법은 없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2.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이란 주주총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의사의 경과요령) 어떤 의사결정을 하였는지(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임(상법 제373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의사(議事)의 경과요령(經過要領)이란 개회, 보고, 의안 설명, 토의의 요지, 표결의 방법, 폐회 등을 말하고,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의 상정, 제안 설명, 동의를 제출, 그 채부, 질의응답의 요지, 표결 등 결의의 방법, 휴게 등 표결에 이르기까지의 주된 경과를 기재하여야 함. 의사의 결과관 제출된 의안에 대한 표결의 결과, 결의의 성립 여부, 결의의 내용 등을 말함.

## 3. 의사록의 인증

의사록의 인증이란 공증인이 의사록의 진정 성립과 함께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검사하는 방법이나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의결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방법 등으로 확인한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임.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의사록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와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및 의사록의 발행주식 총수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발행주식 총수와 다른 경우에도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됨.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이 공증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하더라도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하여야 함(법인 의사록에 대한 인증 사무 처리지침 제8조 참조).

## 4. 본 건 질의에 대한 검토

(가) 일부 의안에 관해서만 인증하는 것의 허용 여부

귀 인가공증인은 일부 인증 불허의 원칙에 따라 위 제1호 안건의 법령위반을 근거로 안건 전부에 대하여 의사록 인증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

는바, 이에 대하여 답하자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제1, 2, 3호 의안 중 일부 의안 처리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사서증서의 일부 인증에 착안하여 “의사록의 제1호 안건 가결 부분에 법령 위반이 있으므로 의사록 중 제1호 의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한다.”는 것과 같이, 진실하지 않은 부분이나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부분을 특정한 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증한다는 식의 의사록 인증은 허용되지 아니함. 통상 사서증서의 인증에서 일부 인증이란 당해 사서증서에 대하여 인증을 할 때 사서증서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그의 작성자들 중 일부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증 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서증서의 작성자들 중 촉탁을 한 나머지(일부) 사람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바, 의사록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만 인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일부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것은 아님.

(나) 일부 내용만 발췌한 의사록의 인증 허용 여부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사항 중 일

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의사록에 대하여는 의사록 인증이 허용되지 않음. 상법이나 그 밖의 어떤 법령에서도 의사록 초록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것을 적법한 의사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다만, 회의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일자를 바꾸어 회의가 속개된 경우에 앞의 날에 이루어진 회의와 뒤에 속개된 회의는 뒤에 속개된 회의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별개의 회의로 취급되므로 각각의 의사록을 의사록 초록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의사록의 인증은 전혀 문제되지 않음.

(다) 감사의 의견진술 기회가 배제된 총회의 의사록 인증 허용 여부

감사의 직무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인바(상법 제412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동조 제2항).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제413조).

질의 사례의 경우는 아마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재무제표 등)에 대해서 감사에게 미리 제출하지도 않고, 심지어 감사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한 보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경우로 보임.

의장의 이러한 총회 진행은 결의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13조),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의장이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이를 보장하고 있는 상법을 위반한 조치로서 법령위반에 해당하고(통상 주주총회에서는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감사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식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감사의 보고 순서를 의도적으로 빼고 총회를 진행한 것은 해당 주주총회 전체에 대하여 법령위반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임), 어떤 의안에 관한 결의 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법령에 위반된 주주총회로서 그 주주

총회에 관한 의사록은 인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인증불허설).

이와 같은 인증불허설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또는 그 준비단계에서 이사가 감사의 감사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닌 점, 의사록 자체는 법률행위(결의)에 관한 처분문서라기보다는 법률행위(결의)에 관한 보고문서라는 점(의사록은 통상 결의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의결권이 없는 자의 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음), 의사록 인증 제도는 법인 등기의 부실등기를 막는 데 있는데 만일 감사(監事)의 감사(監査)에 협력하지 않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록 인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적법한 결의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 상태는 감사의 직무수행에 협력하지 아니한 위법 상태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 정도로는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없는 사유로서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인증허용설). 다만, 인증허용설의 입장에서 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어떤 의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은 주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의사록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의 경과요령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의사록으로서 인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봄.

## 5. 결론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일부 의안에 관하여 감사의 의견진술 기회가 박탈된 경우 그 주주총회에 관한 의사록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초록 형식의 의사록에 대하여는 인증을 부여할 수 없지만 그 사유를 온전히 기재한 의사록인 경우에는 실무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로서는 감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총회가 진행된 경우 그 의사록이 초록 형식이 아니라면, 공증인 본직의 책임과 권한으로 긍정설과 부정설 중 어느 하나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됨. 긍정설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의사록 인증 제도가 불실한 법인

등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절차에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함부로 의사록 인증을 남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 8 인도집행증서 관련 질의 회신(2023. 4. 21.자)

### □ 질의 내용(원문)

『공증과신뢰』 2014년 통권 제7호 300쪽~301쪽의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부 예시 1-1, 1-2) 서식은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 내로 하여 연장시 또는 6개월 내의 단기 임대차계약 시 모든 세부적인 계약사항(위약벌 또는 위약금, 기 발생한 연체차임의 지급약정 및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차임연체금 등)과 더불어 건물인도(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아래 강제집행 승낙 사항을 넣고 공증을 하고(이하 “1호서식”이라 칭함),

동 303쪽의 건물인도(반환)공정증서 서식은 단순한 건물인도(반환)공증(이하 “2호서식”이라 칭함)만 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아래 강제집행 승낙사항 중 1항에 대하여 강제집행 개시(민집 제41조)를 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 또는 공탁 등을 하지 않고도 집행개시가 가능한지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2.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아래 1항의 인도 집행 및 2항과 3항의 위약금, 연체금에 대한 금전집행(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추심)을 하기 위하여 동시에 집행문 2통을 수통신청해도 되는지와, 굳이 아래 1항의 인도집행은 미루고 아래 2항, 3항의 위약금 및 연체료 지급을 하지 않아 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만 압류할 시 법원허가를 받지 않고 집행문 1통을 발급해줘도 되는지요.
3. 위 2호 서식으로도 세부계약사항(위약금 또는 위약금, 연체료 등)과 건물인도(반환), 보증금반환내용으로 아래 강제집행승낙사항을 넣고 공증하여도 무방한지요.
4. 수수료 산정 시 지난 계약기간 차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남은 계약기간 차임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아 래 —

(강제집행의 승낙) ①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한 건물 인도(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② 임차인이 위 제○조 상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의 위약벌의 지급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③ 임차인은 위 제○조 및 제○조 상의 연체임차료, 차임의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④ 임대인은 이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49호(시행 2023. 4. 21.)>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임차건물 반환을 위한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관련 법무부 제시의 예시 1-1, 1-2서식 『공증과신회』 2014년 통권 제7호 제300, 301쪽 참조)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 내로 하여 연장 시 또는 6개월 내의 단기 임대차 계약 시 모든 세부적인 계약사항(위약금 또는 위약금, 기 발생한 연체차임의 지급약정 및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차임

연체금 등)과 더불어 건물 인도(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아래 강제집행사항 즉,

(강제집행의 승낙) ①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한 건물 인도(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② 임차인이 위 제○조상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때의 위약벌의 지급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③ 임차인은 위 제○조 및 제○조상의 연체임차료, 차임의 지급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④ 임대인은 이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라는 것을 넣고 공증을 하고, 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서식 『공증과신회』 2014년 통권 제7호 제303쪽 참조)은 단순한 건물 인도(반환) 공증에만 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와 관련한

(1) 건물 인도(반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 또는 공탁 등을 하지 않고도

집행개시가 가능한지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2-1)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건물 인도(반환)집행 및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집행(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추심)을 하기 위하여 동시에 집행문 2통을 수통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

(2-2) 건물 인도(반환)집행은 미루고,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집행(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추심)만을 하려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집행문 1통을 발급해줘도 되는지 여부.

(3) 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서식 『공증과신회』 2014년 통권 제7호 제303쪽 참조)으로도 세부 계약사항(위약벌 또는 위약금, 연체료 등)과 건물 인도(반환), 보증금 반환 내용으로 위 4개 항의 강제집행 승낙 사항을 넣고 공증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4) 수수료 산정 시 지난 계약기간 차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남은 계약기간 차임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사항과 관련된 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②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 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질의 사안의 해결**

가. 건물 인도(반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 또는 공탁 등을 하지 않고도 집행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및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관련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시피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인도(반환)의무 위반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 또는 공탁 등을 하지 않고는 집행개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동시이행관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것은 아닙니다).

건물 인도(반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 또는 공탁 등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반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을 수령지체에 빠뜨리기만 하면 건물 인도(반환) 집행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나.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건물 인도(반환) 집행 및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집행(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추심)을 하기 위하여 동

시에 집행문 2통을 수통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집행문의 수통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반환)집행의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어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및 제258조 제1항 각 참조),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 집행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각 참조) 두 가지 강제집행을 위하여 동시에 집행문 2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건물 인도(반환)집행은 미루고,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집행(임차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추심)만을 하려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집행문 1통을 발급해줘도 되는지 여부

건물 인도(반환)집행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위약벌에 관한 금원과 연체 차임에 대한 금전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4조 제4호와 제56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행문 1통의 부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집행문의 문구를 “채무자(임차인) ○○○에 대한 금전채무에 한하여 강제집행(건물 인도집행 불포함)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임대인) ◇◇◇에게 이 집행문을 이 사무소에서 부여한다.”라고 기재하여 이 집행문은 건물 인도(반환)집행에는 강제집행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분할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추후 채도부여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분할 집행문 부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금전채무가 특정 기한으로 명확히 되지 않은 위약벌의 금원을 금전채무로 공정증서에 기재하면 그에 대하여는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조건성취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재판과 같은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에서 위약 조건성취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점이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서식 『공증과 신뢰』 2014년 통권 제7호 제303쪽 참조  
으로도 세부 계약사항(위약벌 또는 위약금, 연체료 등)과 건물 인도(반환), 보증금 반환 내용으로 위 4개 항의 강제집행 승낙 사항을 넣고 공증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공증인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고(공증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참조), 위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명으로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그런데 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 서식 『공증과 신뢰』 2014년 통권 제

7호 제303쪽 참조)은 법무부에서 마련하여 제시한 서식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서식 제2조에서 서면(서면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있음)의 인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첨부한 서면을 증서의 일부로 하고 있으므로, 세 부 계약사항(위약벌 또는 위약금, 연체료 등)과 건물 인도(반환), 보증금 반환 내용으로 위 4개 항의 강제집행 승낙 사항을 넣고 공증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금전채무가 특정 기한으로 명확히 되지 않은 위약벌의 금원을 금전채무로 공정증서에 기재하면 그에 대하여는 조건성취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바, 조건성취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재판과 같은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절차에서 위약 조건성취 사실을 확인하기는 매우 곤란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고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 수수료 산정 시 지난 계약기간 차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남은 계약기간 차임만 계산해야 하는

지 여부

공정증서상에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의 차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에 이미 경과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기간까지의 차임을 포함하여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일자에 거래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수수료 산정이 현재나 미래에 거래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수수료 산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할 때,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경우 건물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

**9 의사록 인증 관련 질의 회신(2023. 8. 25.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록 공증 시 주식회사의 본점을 관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서면결의서 제출 하면서 이사회 의사록만 인증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공증실무 Q&A 918번 (2021. 9. 8. 자)가 있습니다. 위 유권 해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협회의 공식 의견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실무 Q&A**

(918) 정관변경 사항인 본점 이전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을 서면결의서만으로 인증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2021. 5. 17질의>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 (서울시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의 건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라는 회사라는 이유로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답변  
불가함.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동시에 촉탁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없음.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 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이사, 감사인 사실의 증명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주주총회의 정관변경(본점 소재지의 변경)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증명한 경우에만 이사회 의사록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음. ☑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88호(시행 2023. 8. 25.)>

**1. 질의 요지**

귀 공증인의 2023. 8. 8.자(귀 사무소의 시행일자 2023. 8. 3.) ‘의사록 공증 질의 사항’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의사록 공증 시 주식회사의 본점을 관외 이전하기 위하여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이사회 의사록만 인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증실무 Q&A 918번(2021. 9. 8.자)가 있는데, 위 유권해석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협회의 공식의견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답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의사록 공증 시 주식회사의 본점을 정관 기재 지역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주소 변경 안건의 이사회 의사록만 인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증실무 Q&A 918번(2021. 9. 8.자)의 유권해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공증인은 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변경등기를 위하여 법인등기사항 내용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의사록을 함께 인증하는 경우입니다(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지침 제5조 참조).

예컨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의 어느 곳인데, 본점 주소를 광명시의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함부로 인증할 수 없고, 정관에서 본점 소재지역이 서울에서 광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사록 형식의 인증이 되지 않은 사문서인 당해 법인 주주들의 서면결의

서라고 주장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74조 및 제396조 제1항 각 참조), 주주총회의 서면결의 시에도 그 의사록 작성 비치 의무가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대한공증인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이형규著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와 그 의사록의 작성 및 공증(2021. 11.)」 제30쪽 이하 참조}, 의사록 공증 시 주식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을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한 경우에도 그 의사록에 대하여 함께 인증 촉탁이 되지 않는 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의 본점 소재지를 포함하는 본점 소재 지역을 벗어난 주소 변경 내용의 안건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함부로 인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10 공증실무 Q&A 답변에 대한 재검토 요청  
관련 질의 회신(2023. 10. 5.자)**

**□ 질의 내용( 원문)**

1. 협회에서는 회원의 2022. 7. 22. 자 송달 증명서 및 송달불능증명서 교부 시, 별도의 수수료 징수 여부의 질문(공증실무 Q&A 1647번)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위 송달 결과에 따라 송달증명서 또는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송달 신청에 따른 공증인의 일련의 직무에 속하므로, 위 송달수수료와 송달에 필요한 실비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이의

- (1) 우편송달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면 발송인 공증인(인)란에 공증인이 기명(서명)하게 되어 있어, 위 우편송달보고서 자체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독립된 문서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공정증서 등본 등 송달, 송달불능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은 위와 같이 송달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우편송달보고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공증인의 일련의 직무라기보다는 별개의 공증인의 증서작성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4) 결론적으로 우편송달보고서와 송달(불능)증명서는 공증절차 및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작성된 문서 자체도 독립

된 문서이므로 각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5) 수수료의 경우 위 증명서는 수수료규칙 제26조의 수수료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23조의2에 따라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4,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협회 건의 사항

공증실무 Q&A는 공증실무를 하고 있는 공증인은 물론 사무직원들에게 중요한 실무지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다만 현재와 같이 질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및 해석이 다르며 좀 더 심층 법률적 검토를 요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위 Q&A 외에 회원들이 협회에 공식적(문서 등)으로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92호(시행 2023. 10. 5.)>

1. “답변에 대한 이의”에 대한 답변

가. “답변에 대한 이의”의 요지

송달(불능)증명서는 송달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들 문서를 작성, 발급하는 행위는 송달 신청에 따른 공증인의 일련의 직무라기보다는 별개의 공증인의 증서작성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공증인은 송달(불능)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송달증명서 또는 송달불능증명서 교부 시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협회의 『공증실무 Q&A』 답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답변

- (1) 종전 협회의 『공증실무 Q&A』 답변에 올린 바와 같이, 송달 결과에 따라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송달 신청(공증인법 제56조의5 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일련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송달 수수료와 송달에 필요한 실비 이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 참조**

공증인법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2) 특히 공증인법, 시행령 및 공증인수수료 규칙에는 송달(불능)증명서의 작성,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 참조**

공증인법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 ①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송달에 필요한 실비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한다.

② 법 제56조의4(※ 주 : 제56조의5의 오기로 보임)에 따른 우편에 의한 송달의 수수료는 4천 원으로 한다.

따라서 실무상 송달(불능)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3) 또한 송달(불능)증명서의 작성 발급이 공증인법 제56조의5 제2항의 ‘우편에 의한 송달’에 부수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7조의 유추 적용도 송달(불능)증명서의 작성 발급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7조(주된 법률행위와 부수된 법률행위) 주된 법률행위와 함께 이에 부수된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4) 요컨대, 송달(불능)증명서를 교부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종전 『공증실무 Q&A』 답변을 유지합니다.

다. 참고사항

다만, 귀 공증인이 지적한 것처럼, 송달(불능)증명서는 송달 여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이므로, 이들 문서의 작성, 발급 행위를 송달 신청에 따른 공증인의 행위와는 별개의 공증인의 증서 작성 행위로 보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협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공증실무 Q&A” 답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다른 해석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심층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증 실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언제든지 협회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지금까지 회원의 서면 질의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회원을 위하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11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2023. 11. 22.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해외에 있는 변호사에게 해외에서의 소송을 위임하는 외국어로 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예컨대, 중국 내 소송을 중국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내용), 위임장 공증 수수료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105호(시행 2023. 11. 22.)〉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3. 10. 25.자(귀 법인 시행일자 2023. 10. 23.)의 귀 법인 문서번호 2023-14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해외에 있는 변호사에게 해외에서의 소송을 위임하는 외국어로 된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예컨대, 중국 내 소송을 중국변호사에게 위하는 내용)의 위임장 공증 수수료 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신 내용

대한민국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실질적 위임약정이 별도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순한 대리권 수여 사실만을 표창하는 제소전화해 등에 관한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의 인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의2에 의하여 3천 원(외국어의 경우 6천 원)이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닌 외국법원에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에서의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실질적 위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의 의미도 겸하는 위임

장에 대한 인증 수수료로 보아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서 쌍방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81,500원이고, 일방만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51,500원으로 봄이 상당합니다(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별도). ☒

12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2023. 11. 22.자)

□ 질의 내용(원문)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법인에서 외국어로 작성한 임명장/파견서(예컨대, 해외 법인장으로 임명/파견한다는 내용)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공증 시, 공증 수수료를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106호(시행 2023. 11. 22.)〉

1. 질의 요지

귀 인가공증인의 2023. 10. 25.자(귀 법인 시행일자 2023. 10. 23.)의 귀 법인 문서번호 2023-15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국내법인에서 외국어로 작성한 임명장/

파견서(예컨대, 해외 법인장으로 임명/파견한다는 내용)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공증 시 공증 수수료 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신 내용

국내법인에서 외국어로 작성한 임명장/파견서(예컨대, 해외 법인장으로 임명/파견한다는 내용)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각 (준)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로서 목적이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 51,500원입니다(사본 제작 보존 수수료 별도). ☒

**13 유언공증 서류 열람 관련 질의 회신 (2023. 12. 22.자)**

□ 질의 내용(원문)

제목 : 유언철회 된 공정증서상의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이해관계인으로 서류열람 및 등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유언공정증서(A)를 작성한 후 유언자가 예전의 유언공정증서(A)를 철회하고 다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유언공정증서(B)를 작성하였고, 유언자의 사후에 수증자 중의 1명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새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B)의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증자가 다시 방문하여 예전의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의 등본신청을 요구합니다. 등본신청을 요구하는 수증자는 예전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와 새로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B)의 유언 내용으로는 변함이 없이 기존의 유언 내용대로 유증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즉 기존의 유언공정증서(A)로 배치되지 않는 수증자입니다.

이 경우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효력이 상실된 유언공정증서상의 수증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철회된 공정증서(A)의 등본발급신청이 가능한지요.

● 협회 회신 내용

<공증협 제2023-111호(시행 2023. 12. 22.)>

1. 질의 요지

2023. 11. 23.자 접수 귀 인가공증인의 ‘유언철회 된 공정증서상의 유언자 사망 후 이해관계인으로 서류 열람 및 등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목하의 질의 취지의 요지는, “유언공정증서(A)를 작성한 후 유언자가 예전의 유언공정증서(A)를 철회하고 다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새로운 유언공정증서(B)를 작성하였고, 유언자의 사후에 수증자 중의 1

명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새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B)의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그 수증자가 다시 방문하여 예전의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의 등본신청을 요구하는바, 이 경우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효력이 상실된 유언공정증서상의 수증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철회된 공정증서(A)의 등본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쟁점과 관련된 규정

질의 사안의 쟁점은 공정증서의 원본 열람 청구권과 등본 발급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특히 철회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법 제43조 제1항에서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50조 제1항에서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는 공정증서의 원본 열람 및 등본 발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철회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철회되지 않은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와 철회된 유언공정증서의 경우 사이에서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의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본 사안의 수증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

질의 사안의 수증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상의 수증자에게는 특별한 추가 증명 없이도 유언공정증서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철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이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그들에게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고,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야 비로소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철회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정증서상의 수증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그들에게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등본을 발급해주지 않음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당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철회되었음이 당해 공증인에게 현저한 사실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수증자에게 유언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등본신청을 요구하는 수증자가 철회된 유언공정증서(A)와 새로이 작성된 유언공정증서(B)의 유언 내용으로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증을 받은 수증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후에 그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공증사무소에서 철회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공증인에게 현저한 사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나, 먼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와 다른 공증사무소에서 철회 및 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먼저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는 철회 사실을 알 수 없어서(철회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어서)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과 등본 발급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4. 결론

공증인에게 철회 사실이 명백하고 현저한 경우에는 철회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서 그 증서에서 수증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그 수증자 측에서 특별히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는 한 유언공정증서의 원본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공증업무 지침 · 지시 · 유권해석 등 회원 안내**

**❶ 사서증서(진술서 또는 확인서) 인증 수수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원 회람 (2023. 1. 27.자)**

- 협회는 2022. 11. 3. 인가공증인 ○○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영문 진술서(또는 확인서) 인증 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질의”와 관련된 협회 회신 내용을 회원 사무소에도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는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의결(2023. 1. 16.)에 따라, 동 질의와 회신 내용을 2023. 1. 27.(공증협 제2023-8호) 각 회원 사무소에 회람함.
- 동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업무 질의·회신” 중 ⑥ 주주총회 참석 인증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❷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와 출장 비용(일당, 여비, 실비)의 징수에 관한 업무 처리방법 시행 회원 안내(2023. 2. 20.자)**

- 공증실무상 통일되어 있지 않던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 및 출장 비용에 대하여, 협회는 검사수수료는 보수에 해당하고, 출장비용은 실비 변

상의 개념이므로 ①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수수료와 ②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각 호의 비용 및 ③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의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3만 원)를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업무처리방법을 2023. 2. 20. 각 회원사무소에 안내함.

**● 협회 공문 원문**

〈공증협 제2023-22호(시행 2023. 2. 20.)〉

수신 : 각 회원 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목 :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와 출장 비용(일당, 여비, 실비)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안내

1. 귀 회원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9조의2)와 공증 사무소 밖으로 출장함에 따른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각 호의 비용(일당, 여비 등)의 징수에 대하여 현재 각 공증사무소의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본 협회는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그 업무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는 ‘검사의 수수료’라는 공증인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출장비용은 시간적·지리적 상황에 따라 실제로 드는 구체적인 비용 즉 실비 변상의 개념으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따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각 회원사무소에서는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이른바 ‘참석인증’)에는 ①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수수료와 ②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각 호의 비용 및 ③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의 의사록 인증의 수수료(3만 원)를 각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③ 주주총회 참석인증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원 회람(2023. 3. 22.자)**

- 협회는 2023. 3. 13. 임명공증인 ○○○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주주총회 참석 인증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협회 회신 내용을 회원 사무소에도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는 2023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2023. 3. 21.)에 따라, 동 질의와 회신

내용을 각 회원 사무소에 2023. 3. 22.자(공증협 제2023-36호) 및 2023. 3. 23.자(공증협 제2023-38호/제2023-36호 공문 정정 안내)로 회람함.

- 동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업무 질의·회신” 중 ⑥ 주주총회 참석 인증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주요 활동

### ❶ 제22대 집행부 출범(2023. 3. 25. 2024년도 정기총회 선임)

□ 임기 : 2023. 3. 26.부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임원 중 상임 집행부(총 17명)

순번	직책	성명(한자)	생년월일	사무소명칭	자격취득사유
1	협회장	박종순(朴鍾淳)	1961. 1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제26회 사법시험
2	부협회장	오재창(吳在昌)	1961.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제29회 사법시험
3	부협회장	이점인(李点仁)	1959. 1.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제30회 사법시험
4	부협회장	김정태(金丁泰)	1960. 6.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	제30회 사법시험
5	부협회장	정연복(鄭鍊福)	1966. 4. 18.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제32회 사법시험
6	부협회장	문정현(文正鉉)	1960. 7. 11.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제33회 사법시험
7	부협회장	임성우(林聖佑)	1974. 4. 9.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제44회 사법시험
8	상임이사	김철기(金哲起)	1966. 3.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제33회 사법시험
9	상임이사	문정환(文正丸)	1966. 8. 7.	공증인 문정환 사무소	제39회 사법시험
10	상임이사	안철현(安哲賢)	1969. 1.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제41회 사법시험
11	상임이사	배영철(裴永鐵)	1968. 12. 16.	공증인 배영철 사무소	제42회 사법시험
12	상임이사	박범진(朴範鎭)	1969. 2. 21.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제43회 사법시험
13	상임이사	박중욱(朴重旭)	1961. 10. 29.	서울대법 공증인합동사무소	제44회 사법시험
14	상임이사	양승원(楊承原)	1966. 12. 24.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제45회 사법시험
15	상임이사	류혜민(柳慧珉)	1976. 11. 1.	공증인 류혜민 사무소	제46회 사법시험
16	감사	김진섭(金鎭燮)	1957.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제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17	감사	이상석(李相錫)	1952. 10. 22.	공증인 이상석 사무소	제5회 군법무관임용시험

□ 임원 중 (일반) 이사(총 20명)

순번	성명(한자)	생년월일	사무소명칭	자격취득 사유
1	이홍우(李洪雨)	1964. 3.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제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2	양종관(梁鍾官)	1967. 2. 11.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길	제37회 사법시험
3	조범제(趙凡濟)	1964. 6.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우	제41회 사법시험
4	양춘식(梁春植)	1960. 6.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	제42회 사법시험
5	박소현(朴昭炫)	1976. 4.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	제47회 사법시험
6	이지훈(李志訓)	1975.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제46회 사법시험(연수원 38기)
7	최창림(崔昌林)	1961. 7. 29.	공증인 최창림 사무소	제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8	김은효(金垠孝)	1957. 12. 13.	공증인 김은효 사무소	제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9	안창권(安昌權)	1963.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동	제28회 사법시험
10	황순헌(黃淳憲)	1957. 5. 19.	공증인 황순헌 사무소	제25회 사법시험(연수원 17기)
11	이중산(李重山)	1961. 4. 25.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제34회 사법시험
12	정진용(鄭震容)	1970. 6. 10.	공증인 정진용 사무소	제40회 사법시험
13	정창섭(鄭昌燮)	1974. 7. 9.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제40회 사법시험
14	강승필(姜昇泌)	1974. 8.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제42회 사법시험
15	심재훈(沈載勳)	1977. 5. 21.	공증인 심재훈 사무소	제42회 사법시험(연수원 33기)
16	김영호(金榮浩)	1960. 2.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남로	제31회 사법시험
17	황규범(黃圭範)	1956. 9. 29.	공증인 황규범 사무소	제23회 사법시험
18	설승문(薛承文)	1962. 7.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제33회 사법시험
19	허정룡(許正龍)	1962. 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제33회 사법시험
20	박인출(朴仁出)	1956. 3. 7.	공증인가 목포합동법률사무소	제26회 사법시험

②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유관기관 예방

(1) 법원행정처장 예방

- 일시 : 2023. 4. 6.(목) 16:00
- 참석 :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 내용 : 공증 제도 발전 및 대국민 홍보 건의

(2)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 일시 : 2023. 4. 7.(금) 10:00
- 참석 : 협회장, 오재창·정연복 부협회장
- 내용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및 유언공증 활성화 등 공증제도 연구 사업 건의

(3)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예방

- 일시 : 2023. 4. 17.(월) 14:00
- 참석 : 협회장, 오재창·김정태·정연복 부협회장
- 내용 : 협회 사무국 변호사교육문화관 입주 협조 요청

(4) 대한법무시험회장 및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예방

- 일시 : 2023. 4. 24.(월) 15:00
- 참석 : 협회장, 김정태·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범진 재무이사
- 내용 : 임의후견계약과 공증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환담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방

- 일시 : 2023. 5. 15.(월) 14:00
- 참석 : 협회장, 이점인·김정태 부협회장, 안철현 기획이사

- 내용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무부 독려 협조 요청

(6) 법무부장관 예방

- 일시 : 2023. 6. 1.(목) 15:00
- 참석 :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
- 내용 : 공증인 수수료 규칙 현실화를 위한 개정 및 협회 내 공증인징계 위원회의 설치 등을 적극 건의

(7) 법률신문사장 예방

- 일시 : 2023. 6. 23.(금) 14:30
- 참석 : 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류혜민 공보이사
- 내용 : 유언공증 등 공증제도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환담

**3 상설기구 및 상설위원회 구성**

(1) 공증인연수원(총 8명, 원장 2023. 5. 23. 및 위원 2023. 6. 16. 각 임명)

○ 상설기구 - 임기 : 임명일부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순번	구분	성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1	원장	이관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1965. 9. 1.	제39회 사법시험
2	부위원장	박상진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안산제일	1959. 4. 20.	제25회 사법시험
3	간사	정창섭	공증인 정창섭 사무소	1974. 7. 9.	제40회 사법시험
4	위원	김세진	공증인 김세진 사무소	1956. 6. 4.	제24회 사법시험
5		배영철	공증인 배영철 사무소	1968. 12. 16.	제42회 사법시험
6		신환복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	1964. 8. 20.	제43회 사법시험
7		한정화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1963. 12. 24.	제31회 사법시험
8		황순헌	공증인 황순헌 사무소	1957. 5. 19.	제25회 사법시험

(2) 조사위원회(총 6명, 위원장 2023. 5. 23. 및 위원 2023. 8. 2. 각 임명)

○ 상설기구 - 임기 :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순번	구 분	성 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1	위 원 장	양 경 석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1953. 1. 8.	제24회 사법시험
2	부위원장	배 헌 수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우일	1968. 11. 29.	제46회 사법시험
3	간 사	안 철 현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투스	1969. 1. 23.	제41회 사법시험
4	위 원	강 석 민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백상	1970. 11. 2.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5		심 재 훈	공증인 심재훈 사무소	1977. 5. 21.	제42회 사법시험
6		이 주 형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길	1971. 11. 2.	제38회 사법시험

(3) 법제위원회(총 6명, 위원 2023. 12. 19. 각 임명)

○ 상설위원회 - 임기 :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순번	구 분	성 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1	위 원 장	박 중 욱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1961. 10. 29.	제44회 사법시험
2	부위원장	이 승 철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1961. 9. 29.	제38회 사법시험
3	간 사	박 순 욱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1977. 12. 10.	제44회 사법시험
4	위 원	김 진 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1967. 4. 18.	제46회 사법시험
5		장 현 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서울	1968. 5. 14.	제46회 사법시험
6		정 형 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1957. 4. 11.	제34회 사법시험

(4) 국제위원회(총 5명, 위원 2023. 12. 19. 각 임명)

○ 상설위원회 - 임기 :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순번	구 분	성 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1	위 원 장	오 재 창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1961. 5. 29.	제29회 사법시험
2	부위원장	강 신 하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1961. 1. 20.	제37회 사법시험
3	간 사	이 지 훈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1975. 4. 10.	제46회 사법시험
4	위 원	안 찬 식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총정	1971. 10. 26.	제41회 사법시험
5		최 윤 상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정진	1968. 5. 29.	제41회 사법시험

(5) 기타 : 공증실무 증보판 간행위원회 활동

○ TF(특별전담조직) - 임기 : 공증실무 증보판 간행 때까지

순번	구분	성명	사무소	생년월일	자격취득사유
1	위원장	박종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1961. 11. 12.	제26회 사법시험
2	위원	김세진	공증인 김세진 사무소	1956. 6. 4.	제24회 사법시험
3		김재수	공증인 김재수 사무소	1972. 10. 27.	제42회 사법시험
4		박중욱	서울대법 공증인 합동사무소	1961. 10. 29.	제44회 사법시험
5		배영철	공증인 배영철 사무소	1968. 12. 16.	제42회 사법시험

④ 법무부와의 공증실무협의회 2회 개최

(1) 제7차 회의

- 일시 : 2023. 5. 26.(금) 14:00~15:00
- 내용 : 법무부장관 예방 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공증실무 현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

<p>❖ 협회 건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li> <li>② 서류검열 제도개선 건의</li> <li>③ 공증인정년 폐지 건의</li> <li>④ 증서경정제도 도입 건의</li> <li>⑤ 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 도입 건의</li> <li>⑥ 기타 : 모바일 신분증 및 화상공 증 등 공증실무관련 건의</li> </ul>
--

(2) 제8차 회의

- 일시 : 2023. 8. 17.(목) 16:00~17:00
- 내용 : 법무부가 제안한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및 협회가 제안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관련 현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

⑤ 권역별 회원 간담회 2회 개최

(1) 2023년도 제1차 간담회(서울 지역)



2023년도 제1차 간담회 (서울 지역)

- 일시 : 2023. 8. 18.(금) 18:30~20:30
- 장소 : 서울 서초동 소재 한식당(서라벌 한정식)
- 참석 : 박동수(법인 신사) 회원 등 14명 및 임원 9명 포함 총 23명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번역문 인증 시 서약인의 서명날인제도 개선 요청

- ② 유언공증의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등을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추진 등 공증 직역 확대에 관한 협회 차원의 방안 마련 요청
- ③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 시 반드시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 마련 요청
- ④ 공증의 중요성 및 필요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요청(예: 라디오 광고방송 송출)

(2) 2023년도 제2차 간담회(부산·울산·창원 지역)



2023년도 제2차 간담회(부산·울산·창원 지역)

- 일시 : 2023. 11. 13.(월) 12:00~13:30
- 장소 : 부산 거제동 소재 한식당(가야골)
- 참석 : 김동욱(임명공증인) 회원 등 6명 및 임원 3명 포함 총 9명
- 내용 : 공증제도 개선 회원 의견 청취
  - ①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요청
  - ② 공증업무 건수 감소 원인 분석 요청
  - ③ 공정증서 작성 시 서명날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요청

- ④ 공증의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상 쌍방대리 금지 규정 해소 방안 마련 요청

**6 공증수수료 현실화 및 검열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 의견 수렴**

□ 협회는 제22대 집행부 출범에 즈음하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공증 수수료의 현실화 및 공증사무 검열제도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2023. 4. 4.(화)부터 4. 12.(수)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시행함.

**공증 수수료 현실화 및  
검열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 의견 수렴**

**1. 공증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 (1) 수수료 현실화를 해야 할 특정 공증 업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예컨대) 의사록 인증, 위임장 인증 등
- (2) 현실화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수료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수수료를 특정하여 주십시오.  
예컨대) 의사록 인증 수수료 30,000원에서 20,000원 증액한 50,000원으로
- (3) 해당 수수료를 책정하였다면 수수료 인상의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컨대) 검토할 첨부 서류의 종류가 다른 증서에 비하여 2배 이상 상대적으로 많음

**2. 서류 검열에 관하여**

- (1) 통상 서류검열이 마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신문을 받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2) 서류검열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3) 서류검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해 주십시오.

□ 협회는 각 회원 사무소의 회신 의견을 취합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후, 법무부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 등 공증 법령 개정 및 검열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

□ 그 결과 중 하나로 법무부로부터 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 및 제80조(서류의 검열)에 따른 공증사무 정기검열대상 공증사무소 목록을 2023년 하반기부터 통보받아 해당 회원에게 안내하고 있음.

**7 출판 및 홍보 활동**

(1) 2022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5호) 발간

- 발간 : 2023. 2. 28.자 PDF 파일
- 내용 : ① 논단 -공증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약간(若干)의 고찰(考察)/ 박중순 변호사(법인 한미)
- ② 2021년도 협회 주요 회무

- 인쇄 : 총 150면 PDF 파일 제작
- 배포 : 협회 홈페이지 배포

(2) 2023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6호) 발간

- 발간 : 2023. 12. 31.자 책자

- 내용 : ① 시론 -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변천 / 박중순 협회장
- ② 논단 - 공증 절차상의 신분 증명서에 관하여 / 이석준 변호사(법인 명성)
- ③ 논단 - 제한능력자의 의사 능력 등에 관한 고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김은효 공증인
- ④ 국제회의참관기 - 2023 CAAs 인도네시아 정기회의 참관기/ 정연복 부협회장
- ⑤ 협회 제·개정 회규 및 2022년도 주요 회무

○ 인쇄 : 총 264면 580부 인쇄 후, 2024. 1. 15. 우편 발송

○ 배포 : 회원 사무소 및 공증업무대행청, 법무부 및 필진, 법원, 검찰, 변호사회, 국공립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 유관기관 등 500개소 각 1부 배포(단, 법무부 및 필진은 5부, 도서관은 3부)

(3) 2024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

○ 2023년도 달력과 동일한 형태의 2024년도 달력(3단, 기성품)을 구매한 후, 달력 하단 여백에 협회 로고 및 “분쟁 예방은 공증으로”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2023. 12. 7.(목) 각 회원사무소

에 4부씩 발송(택배)을 완료함.

(4) 법률신문사 창간 73주년 축하 신문 광고 협찬

- 법률신문사로부터 요청받은 신문 창간 73주년 축하 광고(“분쟁예방은 공증으로” 문구 포함)를 2023. 11. 30.자 목요일 제 5134호 법률신문 7면 하단에 게재함.

**8** 2023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2회 개최

※ 참여율 제고 차원에서 같은 주제를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2회 교육 시행

- 일시 : ① 제1차 교육 - 2023. 11. 10.(금) 10:00~12:00  
② 제2차 교육 - 2023. 11. 17.(금) 10:00~12:0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 참석 : ① 제1차 교육 - 약 168명(±약간 명, 신청자는 190명)  
② 제2차 교육 - 약 168명(±약간 명, 신청자는 119명)  
\* 온라인 회의 특성상 중복 또는 수시 접속 등의 원인으로 정확한 출석 명단 파악이 어려움.
- 내용 : ① 공증사무 감사 주요 지적 사항(강사 - 법무부 고동재 사무관)  
② 공증업무 질의 회신 주요 사항(강사 - 배영철 교육이사)

**9** UINL(국제공증인연합회) 산하 CAAs (아시아지역위원회) 국제업무 활동

- (1) 2023년도 제1차 CAAs 화상회의 참석
  - 일시 : 2023. 6. 2.(금) 12:00~14:00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 참석 :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 내용 : 2023. 7. 21.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에서 대면회의로 개최 예정인 2023년도 CAAs 정기회의(총회) 토론주제 등에 대하여 각 회원국이 요청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 설명
- (2) 2023년도 CAAs 정기회의(총회) 겸 국제 세미나 참석
  - 주최 :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 일시 : 2023. 7. 19.(수) ~ 2023. 7. 24.(월) / 항공 이동 시간 포함
  - 장소 :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 메리어트 호텔
  - 참석 : 협회장, 오재창·정연복 부협회장, 사무국장 등 4명
  - 내용 : 2024년도 CAAs 위원장 국가에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결정
  - 발표 : 대한민국의 전자공증제도
    - \* 각 회원국은 정기회의에서 전자공증 제도 또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공증인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발표함. 참고로 동 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주제발표한 내용은 기록 차원에서

2023년도 『공증과신뢰』 국제회의  
참관기 부록으로 발표문 원문과 국문  
번역문이 각각 게재되어 있음.

## 10 기타

### (1) 협회 공문서 전자우편 발송 시행 안내

- 협회는 그동안 협회장 명의의 전체 회원 대상 공문서를 등기 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 발송을 위한 서면 복사나 봉투 봉합, 우체국 이송 작업 등에서 인력과 시간, 예산 등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발송하고 불필요한 종이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3. 8. 23. 개최된 제9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 협회장 명의의 제반 공문서를 현행 등기 우편에 의한 서면 발송이 아닌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온라인 발송으로 그 통지 방법을 변경하여 2024. 1. 1.부터 시행하게 됨을 각 회원사무소에 2023. 10. 6.자 공문(공증협 제2023-95호)으로 안내함.

\* 전자우편 공문은 ①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인가공증인의 경우 협회에 신고한 대표공증담당변호사) 정회원 1인 및 ② 정회원이 협회에 신고한 공증사무직원 중 1인 등 회원 사무소별 총 2인의 전자우편(E-mail) 주소로 발송됨.

- 단, 아래 공문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등기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발송함.
  - ① 회원마다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연

회비 납부 안내 등의 공문서

- ② 협회 회칙 및 제반 회규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된 공문서
- ③ 책자 등 전자화문서 변환이 어려운 공문서

### (2) 법무부 차원의 공증수수료 및 전자공증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협조

- 법무부가 공증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11. 6. (월)부터 약 한 달간 일반 국민과 전국 공증사무소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증인 수수료’와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인식 및 평가 등에 대한 대국민 공증제도 인식 여론 조사와 관련하여, 협회는 차체에 공증인 수수료 인상을 위한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각 회원사무소에 2023. 11. 3.자 협조 요청 공문(공증협 제2023-101호)을 보내 독려함.

### (3) 한국산업정보연구소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선 연구용역 시행

- 정부 공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기관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측이 2023. 11. 법무부로부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물가지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위탁받고, 회원

사무소에 대한 실제 공증실무별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작업 과도 연계되는 대단히 중요한 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 회원사무소에 2023. 11. 3.자 협조 요청 공문(공증협 제2023-102호)를 보내 동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참고로 동 연구소가 법무부에 2023. 12. 제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인건비 상승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증인 수수료는 현행보다 44.7%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중기 공증인 수수료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 “공증 업무의 사업 비용을 수수료로 결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구성하는 원가항목인 인건비와 경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그 증감률만큼 수수료를 매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음.

### 2023년도 협회 주요 회무 일지

- 2023. 1. 4. : 2022년도 연수교육 상황 및 실적 보고 / 법무부
- 2023. 1. 16. :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처리 현황보고 처리내용별 세분화 시행 건의에 대한 논의 ② 전자공증시스템의 전자접수부 사용 의무화 시행 건의에 대한 논의 ③ 공증업무 질의(제척사유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검토 및 회신에 대한 논의 ④ 공증업무 질의(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수원지법 안양지원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논의 ⑤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협회 회원 입회 요부 논의 ⑥ 기타 논의
- 2023. 1. 1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소○○○○○○○ 공증인 수수료 청구의 소” 사실조회 회신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소액12단독
- 2023. 1. 20. : 신년 인사 답례 / UINL
- 2023. 1. 25. :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문의 (2022. 11. 3.자)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

법인 ○○

- 2023. 1. 26. : 2023년도 제1차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선거인명부 해석 논의 ②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회칙 규정 개정 건의에 대한 논의 ③ 기타 논의
- 2023. 1. 27. : 사서증서(진술서 또는 확인서) 인증 수수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람 / 회원
- 2023. 2. 1. : 협회 밴드 가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법무부 직무교육 대상자
- 2023. 2. 3. : 임시주주총회 참석인증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2. 7. : 제22대 임원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 회원
- 2023. 2. 7. : 카자흐스탄공증인회의 협력 각서 체결 요청에 대한 협회 측 의견 회신 / 카자흐스탄공증인회
- 2023. 2. 8. : 2023년도 제1차 법령정비특별 위원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참석인증 검사 촉탁인에 대한 유권해석 재요청 관련

공문안 검토 ② 부모동의서(영문) 수수료 질의에 대한 회신안 검토 ③ 의사록 일부 인증 질의에 대한 회신안 검토 ④ 자기신탁 관련 용어 검토

- 2023. 2. 11. : 2023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예치기간 만료된 정기에금의 재예치 금융기관 선정 논의 ②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질의 회신 논의 ③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에 대한 논의 ④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 논의 ⑤ 2023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⑥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 ⑦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⑧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⑨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⑩ 기타 논의
- 2023. 2. 13. : 의사록 참석인증 검사 촉탁인(신청인)에 대한 법무부 해석 재검토 요청 / 법무부
- 2023. 2. 15. : 제22대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준수 안내 / 회원
- 2023. 2. 15.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 제4차 학술보고회 개최 안내 / 회원

- 2023. 2. 15. :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3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안내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 2023. 2. 2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 부당이득금” 사실 조회서 회신 /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
- 2023. 2. 20. : 질의(수수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2. 20. : 의사록 인증을 위한 참석 검사 수수료와 출장 비용(일당, 여비, 실비)의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시행 안내 / 회원
- 2023. 2. 22.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 법무부
- 2023. 2. 23. :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겸 제3차 상임이사회 연석회의 개최
  - ▶ 제1차 이사회 논의 및 의결사항 :
    - ① 2023년도 사업계획 승인 (수정 가결) ②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 ③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산서(안) 승인 (원안 가결)
    - ④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승인 (원안 가결) ⑤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승인 (원안 가결)
- ▶ 제3차 상임이사회 논의 및 의결사항 :
  - ① 공증실무 질의(영문 경력증명서 인증 수수료) 회신에 대한 논의 ② 공증수수료 산정의 기준 개정 건의에 대한 논의 ③ 유언집행자 결격사유 확인절차 미이행에 관한 검열 지적 사항 제외 요청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3. 2. 24. : 제22대 협회장 등 임원 선거 겸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통지 / 회원 및 법무부
- 2023. 2. 27. : 공증제도 개선 연구용역(후견 계약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4차 온라인 학술보고회 개최
- 2023. 2. 28. : 질의(영문 경력증명서 인증 수수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2. 28. : 2022년도 『공증과신뢰』 (통권 제15호) PDF 발간
- 2023. 3. 3. : 2023년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22대 임원 선거 후보자 게재 순위 추첨 방식 결정 및 추첨 ② 제22대 임원 선거 투표관리관 지정 ③ 제22대 임원 선거 투표용지 등 확정 ④ 기타 논의

- 2023. 3. 6. : 제22대 임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및 각 후보자의 소견서 배포 / 회원
- 2023. 3. 6. : 제22대 임원 선거 사전우편투표  
신청 안내 / 회원
- 2023. 3. 10. : 제22대 임원 선거 사전우편투표  
신청 안내(제2차) / 회원(사전우편투표 기신청  
회원 제외 총 250곳)
- 2023. 3. 16. : 제22대 임원 선거 사전우편투표  
시행 / 사전우편투표 신청 회원 207개소
- 2023. 3. 21. : 2023년도 제4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실무 질의  
(주주총회 참석인증 관련, 의사록  
일부 인증 관련) 회신 논의 ② 유언  
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필요  
여부 지침 건의에 대한 논의 ③ 기타  
논의
- 2023. 3. 22. : 주주총회 참석인증 관련 질의  
회신 내용 회람 / 회원
- 2023. 3. 22. : 유언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필요 여부 지침 요청 / 법무부
- 2023. 3. 24. : 질의(의사록 일부 인증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2. 3. 25. :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제22대 협회장  
및 부협회장, 감사 선출 ② 제22대  
상임이사 및 이사 선임 ③ 대한공증인  
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 승인 (수정  
가결) ④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 (원안 가결)  
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  
회계 예산서 승인 (원안 가결)
- 2023. 3. 31. : 대한공증인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결과 및 제22대 임원 선출 안내 /  
회원
- 2023. 4. 3. : 대한공증인협회 2023년도 정기  
총회 결과 보고 / 법무부
- 2023. 4. 3. : 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 인가  
신청 / 법무부
- 2023. 4. 3. : 대한공증인협회 제22대 상임  
이사(이사) 선임 통지 / 제22대 상임이사 및  
이사
- 2023. 4. 4. : 공증 수수료 현실화 및 검열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의견수렴 / 회원
- 2023. 4. 6.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법원행정처장 예방

- 2023. 4. 7.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 2023. 4. 17.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예방
- 2023. 4. 18. : 2023년도 제5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수수료 현실화 및 검열제도 개선 회원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업무 처리방향 논의 ② 공증업무 질의(인도집행증서 관련) 회신 논의 ③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침 제정에 대한 논의 ④ 임원의 직책수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논의 ⑤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논의 ⑥ 페이퍼리스 회의 진행을 위한 디지털 사업 추진 논의 ⑦ 제2차 이사회 개최 논의 ⑧ 기타 논의
- 2023. 4. 20. : 질의(인도집행증서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4. 24.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예방
- 2023. 4. 26. :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안내 / 회원
- 2023. 4. 28.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121570호) 관련 의견 제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2023. 4. 28. :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통지 /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 2023. 5. 15.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방
- 2023. 5. 16. : 2023년도 제6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회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논의 ② 권역별 회원간담회 개최 계획 검토 ③ 협회 공문서 전자우편 발송 방안 검토 ④ 법무부와의 공증실무협의회 안건 자료 검토 ⑤ 기타 논의
- 2023. 5. 17. : 대한공증인협회 제22대 협회장 취임 인사 발송 / UINL 및 CAAs
- 2023. 5. 23. :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인연수원 연수원장 임명 승인 (원안 가결)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승인 (원안 가결)
- 2023. 5. 26. : 제7차 법무부와의 공증실무협의회

- ▶ 논의 사항 : 법무부장관 예방 시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공증실무 현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

❖ 협회 건의사항

- ①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 ② 서류검열 제도개선 건의
- ③ 공증인정년 폐지 건의
- ④ 증서경정제도 도입 건의
- ⑤ 협회에 공증인징계위원회 도입 건의
- ⑥ 기타: 모바일 신분증 및 화상공증 등 공증 실무관련 건의

- 2023. 5. 26. : 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통지 / 양경석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임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2023. 5. 26. : 공증인연수원 연수원장 임명 통지 / 이관희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임기 2026년도 정기총회일까지)
- 2023. 6. 1.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법무부장관 예방
- 2023. 6. 1. : 일본공증인연합회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축하인사 / 일본공증인연합회 회장
- 2023. 6. 2. : 2023년도 제1차 UINL 산하 CAAs 화상회의 참석
- 2023. 6. 16. : 공증인연수원 연수위원 임명 통지 / 신임 연수위원

- 2023. 6. 19. : 2023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업무 질의 (영문 부모동의서 인증 수수료 관련) 회신안 검토 ② 서류검열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③ 협회지 『공증과신뢰』 정기 간행 계획 수립안 검토 ④ 『공증실무(중보판)』 간행 계획 수립안 검토 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보고서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⑥ 인도네시아공증인협회 주최 2023년도 CAAs 회의 참석 여부 제반 논의 ⑦ 기타 논의
- 2023. 6. 21. : 2023년도 제1차 공증인연수원 회의 개최 통지 / 공증인연수원 연수위원
- 2023. 6. 23. : 제22대 집행부 신임 인사차 법률신문사장 예방
- 2023. 6. 23. : 부모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관련 회원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 법무부
- 2023. 6. 26. : 2023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6호) 게재 원고 모집 / 회원
- 2023. 6. 29. : 2023년도 제1차 공증인연수원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상건례 ② 부

위원장 및 간사 호선

- 2023. 7. 4. : 2023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회원
- 2023. 7. 4. : 법무부의 2023년 하반기 공증 사무 정기검열 대상 안내 / 정기검열대상 회원
- 2023. 7. 10. : 2023년도 제1차 권역별(서울 지역)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서울 지역 회원 사무소 대표
- 2023. 7. 17. : 2023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협회지 『공증과 신뢰』 원고 작성요령안 검토 ② 조사위원회 구성과 향후 계획 보고서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③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보고서(안) 재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④ 공증인 정년제도 관련 쟁점 보고서(안)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⑤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건의 보고서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⑥ 기타 논의
- 2023. 7. 19.~24. : 2023년도 CAAs 정기 회의(총회) 겸 국제세미나 참석 /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 2023. 7. 25. : 2023년도 제1차 공증실무(중보판) 간행위원회(TF)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집필 분담 내용 및 방법 논의
- 2023. 8. 2. :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 통지 / 조사위원회 신임 위원
- 2023. 8. 2. : 2023년도 제1차 조사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 / 조사위원회 위원
- 2023. 8. 7.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주최 국제회의의 참석 요청에 대한 불참 화신 / 우즈베키스탄공증인회
- 2023. 8. 16. : 제8차 법무부와의 공증실무 협의회
  - ▶ 논의 사항 : 법무부가 제안한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및 협회가 제안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 관련 현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 진행.
- 2023. 8. 17.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 등에 관한 건의 / 법무부
- 2023. 8. 18. : 2023년도 제1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서울 지역) 개최
- 2023. 8. 23. : 2023년도 제9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중업무 질의(의사록 인증 관련) 회신안 검토 ② 드라마 촬영 관련 소품용 포스터 협회 로고 사용 협조 요청 논의 ③ 협회 공문서 전자우편 발송 시행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3. 8. 25. : 질의(의사록 인증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23. 8. 25. : tvN 드라마 <○○○○○> 촬영 관련 협회 로고 사용 협조 요청 회신 / (주)쇼러너스 대표이사
- 2023. 8. 25. : 2023년도 제1차 조사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변경 통지 / 조사위원회 위원
- 2023. 9. 14. : 2023년도 제1차 조사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부위원장 및 간사 호선 ② 향후 조사위원회 활동 계획 논의 ③ 기타 논의
- 2023. 9. 26. : 2023년도 제10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공증 서류 날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안)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② 2023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 ③ 공중업무 질의(질의회신 재심의 요청) 회신 논의 ④ 법원의 사실조회(탈회 회원의 공증인 보조자 인적사항 요청) 회신 논의안 ⑤ 기타 논의
- 2023. 10. 5. : 질의(공증인협회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 재심의 요청 관련) 회신 / 공증인 ○○○
- 2023. 10. 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 사무서위조등” 피고사건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3. 10. 5. : 2023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 교육 강사 추천 요청 / 법무부
- 2023. 10. 6. : 협회 공문서 전자우편 발송 시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안내 / 회원
- 2023. 10. 6. : 2023년도 공증사무직원 연수 교육 시행 및 참가 등록 안내 / 회원
- 2023. 10. 6. : 2023년도 제2차 권역별(부산·울산·창원 지역) 회원 간담회 개최 안내 / 부산·울산·창원 지역 각 회원
- 2023. 10. 17. : 2023년도 제11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집행법원의 잘못된 보정명령 시정요구 검토 및

-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② 공증인 퇴직과 임명 제도 개선 건의안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③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 마련 보고서(안)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④ 기타 논의
- 2023. 10. 26.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추천 / 법무부
  - 2023. 10. 27. : 2024년도 장부 조제 인증 신청 안내 / 회원
  - 2023. 11. 3. : 법무부의 공증인 수수료 및 전자공증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 요청 / 회원
  - 2023. 11. 8. : 한국산업정보연구소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선 연구 관련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 안내 / 회원
  - 2023. 11. 10. : 2023년도 제1차 공증사무 직원 연수교육 온라인 개최
  - 2023. 11. 13. : 2023년도 제2차 권역별 회원 간담회(부산·울산·창원 지역) 개최
  - 2023. 11. 17. : 2023년도 제2차 공증사무 직원 연수교육 온라인 개최
  - 2023. 11. 20. : 2023년도 제12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률신문사 창간 73주년 축하 광고 게재 요청에 대한 논의 ② 2024년도 달력 제작 및 배포안 검토 ③ 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의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강사 협조 요청에 대한 논의 ④ 공증업무 질의(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회신 논의 ⑤ 집행법원의 잘못된 보정명령 시정요구 검토 및 향후 업무처리 방향(재)논의 ⑥ 기타 논의
  - 2023. 11. 22. :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 직원 공개 채용 안내 / 서울 소재 법학과 개설 대학교
  - 2023. 11. 22. : 질의(사서증서 관련 공증 수수료 문의)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11. 27. : 2024년도 공증 장부 제공 / 공증대행청 13곳
  - 2023. 11. 30. : 법률신문사 창간 73주년 축하 신문 광고 협찬
  - 2023. 12. 7. : 2024년도 협회 달력 회원 사무소 배포
  - 2023. 12. 7. : 2023년도 제2차 공증실무(증보판) 간행위원회(TF)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간행 계획 및 주요 방향 논의 ② 집필위원별 1차 원고 검토 및 수정본 제출 요령 논의 ③ 공증실무 Q&A 관련 자료 게재 방법 논의
- 2023. 12. 18. : 2023년도 제13차 상임이사회 개최
  - ▶ 논의 및 의결사항 : ① 법제위원회(2023년도) 위원 선임안 검토 ② 국제위원회(2023년도) 위원 선임안 검토 ③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 공증업무 질의(유언공증 서류 열람 관련) 회신 논의 ④ 부모 동의서(영문) 인증 수수료 법무부 유권해석 검토 및 업무처리 방향 논의 ⑤ 기타 논의
- 2023. 12. 19. : 법제위원회(2023년도) 위원 선임 통지 / 법제위원회 위원
- 2023. 12. 19. : 국제위원회(2023년도) 위원 선임 통지 / 국제위원회 위원
- 2023. 12. 22. : 질의(유언공증 서류 열람 관련) 회신 / 공증인가 법무법인 ○○
- 2023. 12. 31. : 2023년도 『공증과신뢰』(통권 제16호) 발간 및 배포

## 2023년도 회원 입회 및 탈회 현황

### 1. 회원 입회 (공증인 임명 및 인가)

- ❖ 공증인 김진출 - 소속 대구지검
  - 임명일 : 2023. 1. 1.
  - 임 기 : 2027. 12. 31.까지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삼락택지길 63, 2층 (삼락동) ☎ 39518
  - 전 화 : 054-435-9007
  - 팩 스 : 054-435-9008
  - 입회일 : 2023. 1. 2.
- ❖ 공증인가 서울동남 법무법인 - 소속 서울 중앙지검
  - 인가일 : 2023. 1. 4.
  - 인가유효기간 : 2028. 1. 3.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박형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7층 (대치동, 홍우빌딩) ☎ 06181
  - 전 화 : 02-539-5011
  - 팩 스 : 02-539-5010
  - 입회일 : 2023. 2. 6.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인가일 : 2023. 3. 6.
  - 인가유효기간 : 2028. 3. 5.까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신은숙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43, 4층  
(서초동, 다보빌딩) ☎ 06735
- 전 화 : 02-522-0119
- 팩 스 : 02-595-0149
- 입회일 : 2023. 4. 11.

❖ 공증인 이진석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23. 5. 2.
- 임 기 : 2028. 5. 1.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수표로 45, 2층  
214호~216호 (저동2가,  
비즈니스터) ☎ 04551
- 전 화 : 02-2269-7089
- 팩 스 : 02-2275-7089
- 입회일 : 2023. 6. 1.

❖ 공증인 이문수 - 소속 수원지검

- 임명일 : 2023. 6. 8.
- 임 기 : 2028. 6. 7.까지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제2층  
제2-25호 (삼평동,  
판교푸르지오월드마크) ☎  
13525
- 전 화 : 031-778-7009
- 팩 스 : 031-624-5292
- 입회일 : 2023. 8. 1.

❖ 공증인 박종수 - 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23. 7. 28.
- 임 기 : 2028. 7. 27.까지

- 소재지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200호~202호 (충무로2가, 신일빌딩)  
☎ 04537
- 전 화 : 02-779-5581
- 팩 스 : 02-779-5584
- 입회일 : 2023. 8. 9.

❖ 공증인 김석종 - 소속 대전지검

- 임명일 : 2023. 9. 26.
- 임 기 : 2028. 9. 25.까지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206호  
(읍내동, 영진빌딩) ☎ 31777
- 전 화 : 041-353-0885
- 팩 스 : 041-357-0885
- 입회일 : 2023. 10. 11.

## 2. 회원 탈회 (공증인 면직 및 인가취소)

❖ 공증인가 동남 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박형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7층  
(대치동, 홍우빌딩)
- 탈회일 : 2023. 1. 4.
- 사 유 : 사무소 해산에 따른 공증인가  
취소

❖ 공증인 김상호

- 소 속 : 부산지검
- 소재지 :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2, 1층 (구포동)
- 탈회일 : 2023. 1. 10.
- 사 유 : 본인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강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유영상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5층  
(역삼동, 삼원타워)
- 탈회일 : 2023. 2. 16.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 김길찬

- 소 속 : 대전지검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206호  
(읍내동, 영진빌딩)
- 탈회일 : 2023. 7. 20.
- 사 유 : 임명공증인 사임신청서 제출

❖ 공증인 김학성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200호~202호 (충무로2가,  
신일빌딩)
- 탈회일 : 2023. 8. 2.
- 사 유 : 재임명 불허

❖ 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이원

- 소 속 : 수원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장원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3층 (관양동, 동안타워)
- 탈회일 : 2023. 9. 21.
- 사 유 : 법무법인 해산

❖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

- 소 속 : 부산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정재성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406호  
(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 탈회일 : 2023. 9. 21.
- 사 유 :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소 속 : 부산지검
- 대표 공증담당변호사 : 여태양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207호  
(거제동, 정림빌딩)
- 탈회일 : 2023. 12. 29.
- 사 유 : 사무소 해산에 따른 공증인가  
취소 신청

❖ 공증인 이강남

- 소 속 : 부산지검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3층 (거제동, 위너스빌딩)
- 탈회일 : 2023. 12. 31.
- 사 유 : 공증인 정년

### 3. 회원 명칭 변경 인가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현
- 인가일 : 2023. 5. 16.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 소 속 : 인천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 인가일 : 2023. 10. 16.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구명칭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결
- 인가일 : 2023. 11. 9.

### 4. 공증사무소 이전 인가

#### ❖ 공증인 이승식 사무소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중구 명동길 65, 1304호 (명동1가, 보림빌딩)  
[구 주소]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 5층 (노량진동)
- 인가일 : 2022. 12. 27.

#### ❖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104호 (하동, 유성법조프라자)  
[구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701호 내지 703호, 107호 (하동, 유성법조프라자)
- 인가일 : 2023. 1. 3.

#### ❖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청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2, 1층 (서초동, 승소빌딩)  
[구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6, 4층 (도곡동, 다림빌딩)
- 인가일 : 2023. 2. 3.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 소 속 : 수원지검
- 소재지 : [신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7, 906호~907호 (비산동, 안양벤처텔)  
[구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1, 2층 (비산동, 삼성생명빌딩)
- 인가일 : 2023. 3. 3.

#### ❖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 소 속 :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B동 1층 101호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202호 (서초동, 외교센터빌딩)
- 이전일: 2023. 6. 27.
- ❖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 소 속: 서울서부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11호~212호 (공덕동, 공덕푸르지오시티)  
[구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2, 201호 (공덕동, 삼문빌딩)
  - 이전일: 2023. 7. 19.
- ❖ 공증인가 법무법인 센트럴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A동 지하 2층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304호 (서초동, 외교센터빌딩)
  - 이전일: 2023. 8. 18.
- ❖ 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 26-1, 4층 (대방동, 대경빌딩)  
[구 주소]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36, 3층 (방배동, 대광빌딩)
- 이전일: 2023. 8. 28.
- ❖ 공증인 석진국 사무소
  - 소 속: 창원지검
  - 소재지: [신 주소] 경남 거제시 계룡로9길 21-2, 201호 (고현동)  
[구 주소]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3층 (고현동, 대원빌딩)
  - 이전일: 2023. 9. 20.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소 속: 서울중앙지검
  - 소재지: [신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14층·16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구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 16층(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 이전일: 2023. 11. 9.